

성격장애로 인한 상습범죄자의 행동교정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법 무 부

이 연구보고서는 법무부와 연구자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연구자

책임연구자 신 영 철 (성균관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 혜 정 (영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연구자 정 재 열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

신 우 승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이 영 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요 약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상습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교육과 치료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행위자의 상습성과 관련하여 형법각칙과 특별법에 의한 형벌가중과 함께 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형벌과 보안처분(보호감호)의 집행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 이중처벌의 위헌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본래 보안처분의 목적은 사회방위와 함께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피보호감호자를 치료, 개선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지금까지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 처우현황을 살펴보면, 상습성과 관련한 특별한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상습적, 만성적인 범죄자들의 재범을 줄이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치료, 재활프로그램과 전문적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평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어떤 정신적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성격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이 적용될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범죄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정신과적 문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로 알려져 있는데 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 연구에 따르면 50% 이상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만큼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상적인 측면에서 보

면 이들은 정신과적 치료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의 가능성이 극히 적은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에 이르는 사람에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여러 유형의 범죄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단순 구금하는 것은 재발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아직 우리사회는 만성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자들을 단순구금이나 격리 시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같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성격이나 정신과적 질환 등의 유무에 따라 다른 치료적 접근방식이 필요한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국내외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적, 상습적 범죄행위로 인해 청송에 위치한 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격장애와 정신과적 질환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이와 함께 충동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두엽 기능, 지능 등을 평가하였다. 또한 외국의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우방안 등을 비교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의 실정에 맞는 치료프로그램, 특히 반사회적 성격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하였다.

연구는 현지조사를 통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현지조사는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청송 제1감호소와 제2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 중 총 162명에 대해 2004년 7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1차 검사에서는 설문을 통하여 충동성, 분노와 전반적 정신병리 상태를 알아보았고, 2차 검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전두엽관리기능, 지능, DSM-IV(미국 정신과 진단편람)에 의거한 I축 진단과 II축 진단(성격장애)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피보호감호자 162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I측 장애(정신과적 질환 유무)진단을 위해 구조화 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37명의 대상자들을 직접 면담하였다. 이들 중 17명(45.9%)이 물질관련장애(알코올 중독 등)를 비롯한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질관련장애는 반사회성 병리, 즉 충동성, 공격성 및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술을 비롯한 각종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단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의 경우 정신과적 면담과 약물치료 등을 통해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신과적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총 58명을 대상으로 성격장애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대상자 중 28명(48.3%)이 성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18명(31.3%)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되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자체는 정신과적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 특수한 치료환경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환경과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I측 장애가 동반 된 경우 정신과적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공동거주 프로그램이나 병동의 구조와 유사한 수용시설 등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수용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총 162명을 대상으로 충동성과 분노를 측정하였다. 충동성 척도 점수가 높은 피보호감호자들이 상황분노 점수와 특성분노, 그리고 분노표현과 억압이 높은 반면, 분노조절은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동성을 줄여주고 분노를 조절해 주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시설 내에서의 문제, 즉 지금-여기(here-now)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시설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치료적 중재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겠다. 또한 명상 등을 통한 긴장 이완 요법 등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와 지능검사 등을 통한 전두엽 기능검사에서 대상자들은 정상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폭력적 범죄 집단의 경우 기능저하가 더 현저하였다. 이들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신경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접근, 즉 약물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두엽의 기능 중 주의력과 기억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인지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정신과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치매와 같은 기질적 이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시도되고 있는데 이를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범죄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외국의 상습범죄자 처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형벌을 가중하거나 부정기형의 부과 혹은 보안처분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많은 나라에서 형벌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형벌을 가중하는 경우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칫 위험한 상습범죄자뿐만 아니라 전체 범죄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특히 외국의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회치료처우는 우리의 성격장애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우개발과 관련하여 관심 있

게 살펴볼만한 제도의 하나라고 보인다. 사실 독일의 사회치료처우는 처음에 보안처분과 관련하여 논의가 된 제도이다. 1960년대 형법개정작업에서 소위 대안파 교수들에 의하여 제안된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1969년 제1차 형법개정법을 통해 형법 제65조에 신설함으로써 상습범죄자나 처우가 곤란한 자에 대한 처우로 출발하였다. 다만 이러한 보안처분 상의 사회치료처우는 시설정비의 확보에 따른 시간 문제 등을 이유로 1974년 제2차 형법개정법에서 그 시행이 연기되다가 1984년에 삭제됨으로써 보안처분제도로써의 사회치료가능성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보안처분에서 사회치료시설수용처분은 삭제가 되었지만, 독일 행형법 제9조에 이미 형집행 영역에서 사회치료처우의 존속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행형법 제9조에 연계된 제130조에 의거하여 보안감호대상자의 경우에도 사회치료처우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위험한 상습범죄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1970년경부터 각주에서 사회치료시설을 갖추기 시작한 이후로 총 43개(2004년 3월 현재)의 사회치료시설을 두고 약 1,500여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치료처우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필요성과 치료가능성이 전제조건으로 요구된다.

개정 전의 독일 행형법 제9조에 의하면 사회치료시설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 대상자들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였으나, 1998년 소위 '성범죄 및 위험한 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독일 형법 제174조 내지 제180조 그리고 제182조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사회치료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범죄와 관련한 대상자들은 본인의 동의와 사회치료시설 장의 동의가 있는 때에 사회치료시설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특히 성폭력범죄에 중점을 두고 사

회치료처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컨대 베를린에 있는 사회치료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프로그램에는 5가지의 중점프로그램을 두고 있는데, ①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행동양식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② 심층심리에 바탕을 둔 중점과제(개별상담 및 집단치료), ③ 행동치료적 중점과제(집단치료 및 개별상담), ④ 환경치료적 중점과제(사회배우기), ⑤ 반폭력성 훈련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사회치료처우의 모델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빌레펠트 모델'안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폭력성 내지 상습범죄자에 대한 행형상 집행방법의 하나로 구상된 것이다. 이 모델의 특색은 이른바 사회치료법을 이용해서 중한 폭력성 누범자에 대하여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에 폐쇄시설 내에서의 처우를 회피하면서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아래 일반사회의 각종 시설이나 기관을 활용하여 사회복귀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에 개개의 대상자가 사회생활 집단에서 타인과 관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이나 결함을 스스로 자각하여 서서히 자력으로 생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극복기술을 습득시켜 건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회치료의 방법에는 정신분석치료, 정신요법, 진단요법, 행동요법, 접촉요법, 작업요법, 약물요법, 음악요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사회치료처우의 모델은 우리의 형집행 과정에서 상습범죄자, 특히 성격장애로 인한 상습적인 범죄자에게 적용해보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외국의 조사결과뿐만 아니라 이번 청송보호감호소에서 피보호감호대상자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도, 상습범죄자들에게 일정부분 성격장애와 관련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알코올중독 등 물질관련장애가 나타난다거나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치료처우를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예산지원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인력과 예산부족만을 이유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 교정처우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현재와 같은 단순 수용적 접근을 떠나 범죄의 유형과 성격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치료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회치료처우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에서 많은 나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와 특히 중한 폭력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같이 최소한 성폭력범죄자 및 특히 폭력성이 중한 강력범죄자 정도만이라도 정신과적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 관련하여 우선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교도소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학자 등 전문 인력과 전문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상습범죄의 많은 경우가 술을 비롯한 물질사용과 연관이 있는데 각종 중독에 대한 적절한 정신적 내지 사회적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 차

I. 서 론	1
II. 연구방법	3
1. 외국의 사례연구	3
2. 현지조사 연구	3
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3
나. 연구도구	4
1)자기보고형 척도	4
기능적, 역기능적 충동성 척도	
분노수준척도, 분노표현양식척도	
간이정신진단검사	
2)개별검사 및 면접	6
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	
단어유창성검사	
한국판 성인용 Wechsler 지능검사 단축형	
SCID-II	
3)임상진단 및 면접	8
SCID-I	
다. 현지조사 연구의 한계점	8
III. 외국의 사례연구	9
1. 상습범죄자 처우에 관한 일반론	9
2. 각국의 상습범 대응방안	12
가. 미국	12
나. 영국	16
다. 스위스	22
라. 오스트리아	25

마. 네덜란드	28
바. 기타 유럽국가들	32
3. 독일의 상습범 처우 현황	34
4. 상습범죄자 교정처우 모델 소개	48
-독일의 '빌레펠트 모델'을 중심으로-	
IV. 현지조사 연구	55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를 대상으로-	
1. 대상자의 기초자료	55
2. 검사결과	56
가. 진단편람에 의한 I축 장애(정신과적 진단)	56
나. 진단편람에 의한 II축 장애(성격장애)	57
다. 충동성 및 분노척도	58
라. 전두엽 기능	61
3. 현지조사 연구에 대한 고찰	64
4. 행동교정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제언	73
V. 결론	75
참고문헌	81

빈 면

I. 서론

성격이란 어떤 개인이 가지는 지속적이며 변화하지 않는 일정한 사고, 감정과 행동의 유형을 말한다.¹⁾ 따라서 성격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격장애 또는 인격장애란 성격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적응 상태를 말한다. 성격의 형성은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과 같이 타고나는 부분도 있으나 일정부분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환경적 요인도 대부분 어린시절부터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일생동안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별한 계기나 적절한 치료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

정신과적 관점에서 보면 성격장애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들 중 범죄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것은 ‘반사회적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로 알려져 있는데 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50% 이상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그만큼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정신과 영역에서는 이들을 정신병질자(psychopaths), 사회병질자(sociopaths), 또는 성격장애자(character disorders)라는 이름을 붙여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어려운 질환으로 여겼고 일부학자들은 이들이 범죄자들이므로 정신의학적 접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결과나 임상적 경험으로 볼 때 이들은 치료의 가능성이

1) Widiger TA, Sanderson CJ. Personality disorders:in Psychiatry, p1291,1997

2) Hare RD. Diagnosis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two prison populations, Am J Psychiatry 140 : 887-890, 1983

극히 적은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에 이르는 사람에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의 여러 보고들을 보면 만성적, 상습적 범죄자들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충동적 성향이 높고, 책임감이 없으며, 후회나 죄책감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범죄의 종류나 양상이 다양화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범죄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단순 구금하는 것은 재발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상습범죄자들이 늘고 있는데 아직 우리사회는 단순구금이나 격리 외에는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같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성격이나 정신과적 질환 등의 유무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국내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적, 상습적 범죄행위로 인해 청송에 위치한 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격장애와 정신과적 질환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이와 함께 충동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두엽 기능, 지능 등을 평가하였다. 또한 외국의 상습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제재의 방향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러한 상습범죄자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의 실정에 맞는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료가 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외국의 사례연구

현재 선진 외국에서 위험한 상습범죄자들에 대하여 어떤 형사법적 대응 방안을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위험한 상습범에 대하여 형벌을 가중하거나 부정기형의 부과 혹은 보안처분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많은 나라에서 형벌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보안처분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형벌가중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외국의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회치료처우는 우리의 성격장애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우개발과 관련하여 관심 있게 살펴볼만한 제도의 하나라고 보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현지조사 연구

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청송 제1감호소와 제2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 중 총 166명에 대해 2004년 7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 1명과 임상심리학자 2명이 감호소에 상주하면서 면접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과 면접은 목적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서면 동의서를 받고 실시되었다.

1차 검사에서는 설문을 통하여 충동성, 분노와 심리장애 상태를 알아보았고, 2차에서는 전두엽관리기능, 지능, DSM-IV(미국 정신과 진단편람)³⁾에 의거한 성격장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3차 검사에서는 DSM-IV I축 장애의 존재 여부와 심층면접을 통한 환자의 개인력을 알아보았다. 면접에 제2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4명은 2차 검사에서 제외되었고, 1차 설문을 작성하였더라도 2차와 3차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역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검사에 충실하게 응하지 않거나 설문자료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2차 검사에서 설문에 응한 166명 중 여성 4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162명의 자료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2차 검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162명 중 58명에 대해 개별 검사 및 면접을, 3차 검사에서는 2차 검사에 참여한 58명 중 37명에 대하여 DSM-IV의 I축 임상장애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나. 연구도구

1) 자기 보고형 척도

기능적, 역기능적 충동성 척도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Scale)

Dickman의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Scale⁴⁾을 번안한 것으로, 23개의 문항을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역기능적

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1994

4) Dickman SJ.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 Personality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 : 95-102, 1990

충동성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성을 뜻하며, 기능적 충동성은 반대로 그런 행동양식이 최선일 때 주저없이 행동하는 경향을 말한다. 각 문항이 기능적 충동성과 역기능적 충동성에 가해지는 비중의 차이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였다.

분노수준 척도 (STAXI-K:State anger, Trait anger),

분노표현 양식 척도 (STAXI-K:AXI)

Spielberger, Johnson, Russel, Crane, Jacobs와 Worden(1988)이 제작한 ‘분노척도검사’를 김백영(1997)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⁵⁾ 본 검사지의 신뢰도는 .79이고 34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분노수준(특성분노)과 분노표현양식(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통제)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별 문항을 수정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특성분노는 분노를 경험하는 경향에서의 개인차를 나타내며, 분노표현방식으로서의 분노억압은 분노의 감정을 자제하거나 억압하는 빈도를, 분노표출은 주어진 환경에서 타인이나 물건 등 어떤 대상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주 분노를 표현하는가를, 분노통제는 개인의 분노표현을 조절하려고 하는 빈도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 Symptom check list-90-R)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평가하기 위하여 Derogatis(1977)에 의해 개발된 간이정신진단 검사(Symptom Checklist)의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번안척도(김재화, 김광일, 원호택, 1984)를 사용하였다.⁶⁾ 이 척도는 적대감, 공포불

5) Spielberger C.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Research edition,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dessa, Florida, 1988

6) Derogatis LR. SCL-90R: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 Manual-II. Towson, MD: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1983

안, 편집증, 정신증,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 우울, 불안의 9개 증상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총 90문항이고, 각 문항은 각각 한 개의 심리적인 증상을 대표하고 있다.

2) 개별 검사 및 면접

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 : WCST)

Berg가 사고의 융통성과 추상적 논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고, Heaton등이 16가지 하위 차원으로 확장한 검사로 추상적 사고능력, 추론능력, 보속적 경향성, 정보유지능력 등 실행기능을 평가하는데 민감한 검사로 알려져 있다.⁷⁾ 본 연구에서는 총 오류 수(total number of errors)에서의 원점수(raw score), 표준점수(standard score), T-점수, 백분율(percentile)등 4항목의 점수와 categories 완성 수-원점수, Failure to Maintain Set-원점수 등 2개 항목을 합쳐 6개 하위 측정치를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단어유창성검사(Word Fluency Test)

단어 유창성은 Benton형 단어 유창성 검사를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Benton형 검사의 과제는 F, A, S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각 1분 동안 많이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 A, S 대신 ㅅ, ㅇ, ㄱ 세 철자를 사용하였다. 단어유창성은 일종의 어휘 검사이므로 언어 검사에 속한다. 그러나 인지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행기능 의존도가 높은 검사이다. 정반응수, 보속반응수, 비어반응수를 측정한다.

7) Heaton RK, Chelune GJ, Tally JL, Kay GG, Curtiss G. Wisconsin card sorting test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dessa, FL, 1993

한국판 성인용 Wechsler 지능검사 단축형

(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

이 검사는 성인용 Wechsler 지능검사(WAIS)를 한국판으로 개정하여 표준화한 지능검사로 언어성 6개, 동작성 5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⁸⁾ 전체 피검자들의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 피검자의 원점수를 환산 점수로 전환하고 있으며, 환산점수의 합을 각 연령별 지능 지수 산출표를 참고하여 언어성, 동작성, 전체 IQ로 환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 검사를 단축형(Doppelt Form)으로 사용하여 언어성 소검사의 어휘 문제와 산수 문제, 그리고 동작성 소검사의 차례 맞추기와 토막 짜기 등의 4가지 소검사를 시행하였다.

SCID-II

SCID-II(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I Personality Disorders)는 DSM-IV의 제 2축에 해당하는 성격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반구조화된 진단용 면담도구이다.⁹⁾ SCID-II에서 DSM-IV에 제시된 10개의 성격장애와 DSM-IV의 공식 진단명으로 채택하기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록 B에 수록되어 있는 우울성 성격장애와 수동공격성 성격장애 등 총 12개의 성격장애를 다루고 있다. SCID-II를 이용하여 특정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방법은, 각 성격장애에서 '3'으로 평가된 진단기준 항목의 개수를 합산하여 그것이 DSM-IV에서 정한 진단기준 항목의 개수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한다.

8) 엽태호, 박영숙, 오경자, 김정규, 이영호 (1992). K-WAIS 실시요강.서울: 한국가이던스.

9) Michael B. First, Miriam Gibbon, Robert L. Spitzer and Janet B. W. Williams.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I Personality Disorders (SCID-II)

3) 임상진단 및 면접

SCID-I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 Disorders)은 DSM-IV의 제 1축에 해당하는 정신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반구조화 된 진단용 면담도구이다. SCID-I은 6개의 독립적인 유형으로 분류되며 정동 삽화, 정신증적 증상, 정신증적 장애, 정동 장애, 약물사용장애 그리고 불안, 적응 그리고 기타 장애로 나누어진다.

다. 현지조사 연구의 한계점

본 조사는 현지에서 직접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는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연구기간이 너무 촉박하였고 둘째, 연구대상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연구기간 중 많은 인원이 가출소 되는 등 변동이 심하여 일관된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자기보고형 설문지의 경우 당시의 감호소 분위기 등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응답하였는지 등의 조사 타당도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반구조화 된 면담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사자가 직접 실시한 객관적인 검사, 예를 들면 전두엽 기능 검사 등의 경우 객관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II. 외국의 사례연구

1. 상습범죄자 처우에 관한 일반론

형벌의 본질과 기능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보는 절대적 형벌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형벌은 책임에 대한 응보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며 인간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던 것이 실증주의 학파에 의하여 인간의 행위에 대한 자연과학적 해명이 가능하게 되면서 형벌의 목적에 범죄예방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형벌의 목적에 이러한 예방적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에도 형벌에 관하여 책임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은 예외 없이 인정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책임원칙은 그 의미론적 불확실성 때문에 도그마틱에서는 책임개념의 확정을 위하여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또한 책임원칙으로부터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나 오용을 견제할 수 있는 통제기능이 결론되는 것도 아니므로 책임원칙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¹⁰⁾ 그러나 전통적인 책임원칙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¹¹⁾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책임원칙의 형벌제한적 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형벌은 이처럼 책임원칙에 입각함으로써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전제되고 또 책임의 양을 넘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

10) Baurmann, "Schuldlose Dogmatik?", in: Lüderssen/Sack(Hrsg.), Abweichendes Verhalten IV, 1980, S. 196ff. 참조.

11) 오늘날 책임원칙에 관한 논의는 전통적인 책임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예방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원칙의 제한을 거쳐 극단적으로는 책임원칙의 포기에 이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재우 편역, 책임형법론-형법상의 책임원칙에 관한 논쟁, 1995 참조). 그러나 예방이론만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 국가형벌권의 남용에 구실을 주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원칙을 발전적으로 구체화하면서 예방적 고려를 특별히 가미한 책임개념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응보적 책임형벌만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범죄의 다양화 및 누범과 상습범의 격증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익보호과제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한 이유에서 상습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제재수단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누범 및 상습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형을 가중하는 방법,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방법 또는 보안처분(특히 보호감호)을 부과하는 방법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가 다르다는 인식 하에¹²⁾ 형법 제35조에 누범의 일반적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형법각칙과 각종 특별법에서 상습범을 따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성과 관련하여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은 자칫 형벌을 목적형 내지 보안형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¹³⁾

결국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이나 부정기형의 도입이 책임주의의 원칙과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시각에서, 행위책임과는 별도로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새로운 형사제재가 요구되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수단으로 보안처분이 제시된 것이다. 즉 엄격한 책임형법에 입각하여 책임에 합당한 형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추가적으로(사회적) 위험성을 근거로 상습범에 대하여 보호감호를 선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12) 판례도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추가하여 누범가중을 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참조).

13) 이에 극단적인 사회방위론자들은 범죄인의 책임이 아닌 위험성 등에 기초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에 대한 내용은 이재상, 사회보호법론, 1981, 31면 이하 참조.

이에 우리나라는 1980년 12월 5일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해 12월 18일 법률 제3286호로 사회보호법을 공포·시행하면서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였다.¹⁴⁾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보호법은 제정 당시부터 사소하게는 용어선정의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절차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¹⁵⁾ 사실 현행 우리의 형사제재에 따르면 이미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과 각각의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각론 내지 특별법에 규정된 상습범가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회보호법 제5조에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위험성의 요소에 대하여 누범 및 상습범 가중처벌을 받고 또 다시 보호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중처벌의 위헌성이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본다.

결국 문제는 현재와 같은 이원주의 입장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형벌일원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선택을 위해서는 형벌이원주의와 형벌일원주의의 입장에 따른 장·단점의 검토와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상습범죄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제재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이러한 상습범

14) 보안처분이란 형벌과 같이 행위자가 범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에 근거한 응보가 아니라,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장래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의 대신 또는 형의 보충으로 과하여 지는 자유의 박탈과 제한을 포함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15) 특히 보안처분제도 중에서 보호감호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이중처벌의 위헌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 및 보호감호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임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보호감호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죄의 원인을 성격장애적 요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상습범죄자에 대하여 특별한 처우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형사제재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각국의 상습범 대응방안

위험한 상습범죄자 내지는 재범자들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의 입법적 태도 내지 실무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보안처분제도의 유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국가 중에서 특히 독일에 관한 내용은 우리의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장을 달리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미국

1) 위험한 재범자(gefährlicher Rückfalltäter)에 대한 형법적 처우의 변화

우리나라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상습범죄자들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으로 보안처분이라는 형벌과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보안처분제도를 갖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는 상습범죄자들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으로 형벌의 장기화라는 형벌강화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20년에 재범자(Rückfalltäter)에 대한 형벌강화 규정이 6개 도시에서 동시에 받아들여지면서, 1920-1930년 사이에 33개 도시에서 재범자들에게 형벌을 강화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다.¹⁶⁾

16) Kinzig, Die Sicherungsverwahrung auf dem Prüfstand, 1996, S. 549; McDonald.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위험한 재범자로 강화된 형벌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범죄로 인하여 한번이상 유죄선고를 받고, 다른 사람의 생명 혹은 안전에 상당히 위험한 (원인)범죄(Anlaßtat)를 범하였거나 혹은 정신적 내지 감정적 장애로 인하여 또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를 성벽 등을 지니고 있거나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중한 범죄가 예상된다고 예측되는 등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¹⁷⁾

특히 미국에서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처벌은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정기형("determinate sentencing system")과 부정기형("indeterminate sentencing system")으로 구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정기형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단지 최단형기(mandatory minimum) 혹은 최장형기(partially indeterminate)만을 선고하거나 또는 양쪽 모두를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결정할 뿐이다.¹⁸⁾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제 석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컨대 가석방위원회(parole board)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되는 것이다.

2) 현재상황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서 미국의 모든 주의 공통된 법 규정이라고 한다면, 이원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형벌의 가중을 통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벌가중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주와 주뿐만아니라, 같은 주안에서조차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범자에 대한 형벌가중의 전제조건에 있어서도 다양한 입법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벌을 어떻게 강화하느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

Repeat Offender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ir Form, Use and Perceived Value, 1986, p. 5.

17) Kinzig, 앞의 책, 550면.

18) Krantz/Branham, Cases and materials on the law of sentencing, corrections and prisoners' rights, 1991, pp.148(Kinzig, 앞의 책, 552면에서 재인용).

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州에서 재범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데 장애물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1982년에 8개 주에서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역시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적용되어서 형벌이 가중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¹⁹⁾ 즉 이러한 형벌가중이 폭력범죄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위험한 재범자로서 가중 처벌되기 위해 요구되는 전과횟수도 1회에서 4회 사이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건과 관련하여, 30여 개 州에서 일반적인 전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몇몇 주에서는 예컨대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등과 같은 보다 엄격한 전과요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소수의 몇몇 주에서는 원인이 되는 범죄와 전과에 대한 기준조건과 함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에 규정된 또 다른 기준으로 행위자특성, 행위자의 정신상태, 장래 재범에 대한 성벽, 재범 방지에 있어서 시민의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성예측(Gefährlichkeitsprognose)이라는 요건은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형벌가중의 정도는 전과 등의 요소에 따라 도식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십여 개 주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중범죄 혹은 폭력범죄로 1회에서 3회의 전과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 가능성을 배제한 필요적 무기자유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가하면 약 7개 주에서는 같은 정도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 가석방(parole)의 가능성이 보장된 필요적 무기자유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다. 2개의 주에서는 (위험한) 재범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

19) McDonald, 앞의 책, p. 10.

자유형을 임의로 부과할 수 있고, 또 10개 주에서는 보호관찰의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 무기자유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참고로 198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법관, 검사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법관의 89% 정도가 이러한 규정을 상습적인 폭력범죄자 뿐만 아니라, 전과가 있는 모든 (중)범죄자(Verbrechen)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²⁰⁾

더 나아가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는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더욱 강화된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경향과 함께 엄격한 형사정책으로 분위기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강성 대응의 한 표현으로 1994년에 ‘폭력범죄통제에 관한 법률(Violence Crime Control and Law)’의 제정을 통해 소위 “3진아웃제도(Three strikes and you are Out)”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3진아웃제도에 따르면 범죄자가 세 번째 폭력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자유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다. 그 예로써 한 젊은이가 두 번의 경미한 강도죄로 처벌을 받은 후, 자신의 아버지와 몸싸움 중에 그 아버지에게 사소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인해 무기자유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²¹⁾ 미국에서 이러한 엄격한 규정은 이미 30개 이상의 주에서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였다고 한다.

3) 소결

미국은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으로 유일하게 보안처분(보안감호)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에서는 위험한 상습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범자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부

20) McDonald, 앞의 책, 31면 이하.

21) Weitekamp/Herberger, Amerikanische Strafrechtspolitik auf dem Weg in die Katastrophe, NKP, 2/1995, S. 17.

정기형이라는 형벌강화와 그에 따른 “가석방위원회에서의 형중지결정”을 통해 사회의 예방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그러한 대응방안이 더욱 강화된 형태로 등장한 것이 ‘3진아웃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형벌가중이 특히 위험한 재범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재범자들, 심지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까지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의 중범죄로 처벌을 받은 자가 세 번째 범죄로 피자를 훔친 것으로 인해 무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나. 영국²²⁾

1) 위험한 재범자(gefährlicher Rückfalltäter)에 대한 형법적 처우의 변화

186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형집행을 받은 후에도 많은 경우 다시금 재범하였다는 상황이 이러한 논의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1880년경 이후 영국에 리스트이론이 소개되면서 그에 대한 적은 반향을 근거로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논의가 잠잠해졌다가, Gladstone위원회의 경험적 조사를 바탕으로 1895년에 다시금 새로운 관심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석방 후에 이미 5번이나 판결을 받은 자가 재범한 경우가 79%나 되는 등 재범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연유하였다. 결국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Gladstone위원회에서는 재범자에게 보다 장기의 자유형을 부과할 것을 건의하였다.

22) 영국에서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우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예컨대 스코틀랜드 형법체계는 “common law”와 “civil law”의 혼합형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북아일랜드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독특한 변화를 가지고 있어 비교하기에 적절하지가 않다는 점에서, England와 Wales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1908년에 영국의 형법체계에 이원주의(double track)를 도입한 예방형법(Prevention of Crime Act)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법에 의하면 젊은 상습범죄자(Gewohnheitsverbrecher)들 보다는, 주로 나이 든 상습범죄자들에게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형벌과 함께 5-10년 정도의 보안구금(Schutzhaft)이 선고될 수 있게 되었다.²³⁾ 이러한 보안구금의 전제조건으로는 우선 16세 이후에 3번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있거나 혹은 이미 “예방구금(preventive detention)”이 판결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최소한 3년 이상의 징역(Zuchthaus)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실질적인 조건으로 그가 항상 불안정한 범죄적 삶을 살아왔다는 배심원의 판단과 함께 또한 범죄의 상습성과 공공(일반인)의 보호를 위해 피고인의 생활을 오랜 기간동안 감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주의입장은 영국에서 40년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방구금(preventive detention)”을 통해서 재범이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러한 “예방구금(preventive detention)”에 진정으로 위험한 재범자가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단지 귀찮은(혹은 사소한) 범죄자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1908년 예방형법(Prevention of Crime Act) 이래 상습범관련 형사법들은 상습범유형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습범에 대한 형법적 대처에 실패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²⁴⁾ 따라서 “예방구금(preventive detention)”의 선고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1937년 이후에는 매년 20건의 선고만이 이루어졌다.²⁵⁾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1948년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Act 1948)에서 다시

23) Geisler, Die Sicherungsverwahrung im englischen und deutschen Strafrecht. Ein Beitrag zur Behandlung und Bestrafung der Rezipidisten, 1967, S. 37ff; Allen, “Die Behandlung der gefährlichen Gewohnheitsverbrecher im eiglichen Strafrecht”, ZStW, 1968, S. 163.

24) Ashworth, Sentencing & Criminal Justice, 3.ed, 2000, pp.160.

25) Geisler, 앞의 책, 206면.

금 일원주의로 환원하게 되었다.

위험한 재범자로부터 일반인의 보호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1991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91)이 개정되기까지 두 가지 관점이 고려되었는데, 소위 “확장적 양형(extended sentences)”과 무기자유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적 양형’이 일반적인 형집행과의 사이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그러한 제재의 부과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1991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91)에 의해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에서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고 위험한 재범자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0년 이하의 장기 자유형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2) 현재상황

1991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91)이후로는 위험한 재범자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장기간의 부정기적 자유형이 적용되었다. 그와 함께 치료가능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례의 경우에는 “구속명령(restriction order)”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

1991년 형사사법법 제29조 1항은 “어떠한 과거의 범죄전력이나 과거수형상의 실책도 당해범죄의 중합의 정도를 높게 판단하는 목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점진적 감경방식을 실정법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범죄자의 전과를 양형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하도록 법관의 재량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형사법관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1993년 형사사법법 제66조 6항은 1991년 형사사법법 제29조 1항을 대신하여 “어떠한 범죄의 중한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법관은 범죄자의 전과나 과거수형상의 실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한 범죄의 상습

범에 대해서는 형사법원이 중한 범죄의 상습범과 차별되는 양형접근방식의 채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경한 범죄의 상습범은 공중의 안정에 중한 해악의 위험이 되지 않는 한 구금형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 임의의 무기자유형(fakultative lebenslange Freiheitsstrafe)도 다양한 범죄에 선고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러한 무기자유형이 주로 살인범죄의 경우에만 드물게 선고되었는데, “예방구금(preventive detention)”이 사라지는 시점인 1960년대 중반부터 1991년 형사사법시행시점까지 장기자유형을 부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중한 범죄를 범하고, 범죄와 전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psychisch instabile Person) 재범가능성이 있고 공공(일반인)에 대한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지면 무기자유형이 부과되었다. 결국 무기자유형이 보안감호 기능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⁶⁾

일반적으로 무기자유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감정이 요구된다. 이는 공공에 대한 위험성이라는 요소가 행위자의 정신적 불안정성(eine anhaltende psychische Instabilität)에 기초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에서 지금까지 정신적 불안정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적 불안정성에 기초한 범죄자의 위험성은 일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확정 짓기 어려운 기준이기도 하다.

위험성의 표지로는 일반적으로 감정이숙, 비정상적인 성충동 특히 성적 환상, 충동성(Impulsivität), 불안정성(Labilität),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없는 중한 성격노이로제, 더 나아가 급격한 행동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판결에서 정신적 불안정성이 인정되

26) Huber, Die Freiheitsstrafe in England und Wales. Gestalt und Krise einer Sanktion, 1983, S. 52f.(Kinzig, 앞의 책, 539면에서 재인용).

지 않기 때문에 무기자유형이 아닌 유기자유형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다양한 사례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임의적(fakultative) 무기자유형의 선고를 통해 1991년 형사사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양형에 있어서 뭔가 새롭고 명확한 제재 범위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결국 1991년 형사사법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① 법원의 판단에 의해 중한 범죄라고 인식되거나 ② 법원의 판단에 의해 폭력범죄 혹은 성범죄에 있어서 중한 침해로부터 공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무제한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행위자의 위험성이 단지 무기자유형의 선고와 집행에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자유형에 대한 양형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내무성 양형제도연구팀의 John Halliday팀장에 의해 간행된 정부보고서 'Making Punishments Work(2001)'의 형벌제도개선에 관한 주요 논점들 중의 하나는 구금형의 경우 실제형기의 절반정도가 경과되면 무조건 석방되기 때문에 특히 상습범의 재범방지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부가석방조건을 특정한 구금형 선고를 가능케 하여 가석방 후에도 잔여형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보호관찰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구금형을 즉시 재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정부의 형사사법백서(Criminal Justice: The Way Ahead 2001)에서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한 범죄율감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양형틀의 구축을 추진할 것을 강조한바 있다. 또 다른 정부백서(Justice For All 2002)에서도 상습 폭력 및 성범죄자에 대한 부정기형을 도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와 함께 2002년 2월부터는 내무성에 의해 상습범규제대책(Persistent Offender Scheme)이 실시되었다. 3년 동안 6회 이상의 절도, 강도, 폭력전

과를 가진 성인상습범을 대상으로 전국경찰전산망에 등록하고 각 지방경찰청에는 관할구역내의 관리대상 상습범 명단이 통보된다. 경찰과 검찰은 관할구역의 대상 상습범을 웹시스템(JTrack)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²⁷⁾

3) 소결

결론적으로 영국에서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다른 나라에서처럼 위험한 재범자에 대하여 중하게 대응하는 형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1908년에서 1948년 사이에는 자유형과 함께 보안처분이 부가적으로 선고되었고, 1948년에서 1965년 사이에는 자유형에 대신하여 보안처분이 부과되면서 독자적인 보안처분만의 선고는 폐지되기에 이르렀는데, 그러한 변화의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보안처분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감호대상자의 범위를 법률적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지음으로써 감호대상범위가 충분히 명백하지 않고, 그 결과 많은 경우에 제재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는 진정으로 위험한 범죄자를 포함하기보다는 오히려 경미한 범죄자를 포함하게 되었다는 것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점차 법관들이 보안처분을 드물게 적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영국에서는 장기자유형과 무기자유형이 보안감호의 기능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기자유형 내지 무기자유형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무엇보다도 폭력범죄 혹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 의한 중한 법익침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7) Home Office, Clamping Down on Persistent Offenders, CJS005/2002.

다. 스위스

1) 위험한 재범자(*gefährlicher Rückfalltäter*)에 대한 형법적 처우의 변화
스위스는 독일의 보안감호와 유사한 상습범죄자(*Gewohnheitsverbrecher*)에 대한 감호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이다. 이는 1942년에 시행에 들어간 스위스 구형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독일의 보안감호제도와 다른 것은 스위스에서는 처음부터 형벌집행과 보안처분집행이 실질적인 대체주의원칙(*vikariierendes Prinzip*)에 입각하고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 즉 스위스에서 감호집행은 형벌집행에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실질적인 감호집행은 최소 3년에서 선고형만큼의 기간이 걸렸다.²⁸⁾

스위스에서 보안감호제도가 스위스 구형법에 규정된 초기에는 그 부과요건이 지나치게 넓게 되어 있어서 해마다 대상자수가 약 100-170명 선을 유지하였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1956-1960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대상자 중에 80.2%가 재산범죄로 인하여 선고받았고, 중범죄자는 상당히 적었으며, 피감호자의 77.3%정도가 2년 이하의 자유형을 부과 받은 자들이었다. 따라서 당시 감호대상자는 본래의 취지대로 위험한 상습범죄자가 아닌 단지 귀찮은 경미한 범죄자들이었고, 결과적으로 당시 스위스 구형법 제42조에 의거한 감호제도를 통해 징계효과 내지 위하효과 또는 재사회화효과도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²⁹⁾ 즉 위험한 상습범을 겨냥했던 보안처분(보안감호)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소한 작은 범죄들을 규율하게 되었고 반대로 정말로 위험한 범죄인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28) Kinzig, 앞의 책, 490면.

29) Conrad, Das Verhalten von 100 Insassen der Verwahrungsanstalt Thorberg nach ihrer Entlassung. Eine kriminologische Untersuchung von 100 nach Art. 42 StGB Eingewiesenen, Bern, 1973, S. 85(Kinzig, 앞의 책, 492면에서 재인용).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³⁰⁾

1971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감호처분을 받게 되는 요건이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감호선고건수가 약 절반정도로 감소하였고, 그 결과 1983년 이후에는 해마다 20명 정도가, 1990년 이후에는 약 10명 정도가 선고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스위스에서도 보안감호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그 하나가 보호감호의 집행이 통상적인 자유형의 집행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상습범에 대한 보안처분이 본질적으로 책임을 초과하는 부정기자유형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스위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형법개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90년대 이후에는 피보호감호자의 수도 점점 줄어서 1993년에는 9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2) 현재상황

1971년 입법자들은 보안감호선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비판이 되어오던 보안감호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했다. 그 결과로 스위스 구 형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고의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징역형(Zuchthausstrafen) 혹은 감옥형(Gefängnisstrafe), 노동형(Arbeitserziehungsmaßnahme)을 최소 2년 이상 집행 받거나 혹은 상습범죄로 이미 자유형의 집행대신에 감호를 집행 받은 자가 석방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고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그의 범죄적 성향에 근거한 것인 경우 법원은 징역형(Zuchthausstrafe) 혹은 감옥형(Gefängnisstrafe) 대신에 감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면 범죄자의 정신감정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Conrad, 앞의 책, 27면 이하.

특히 스위스 보안감호요건에는 독일에서 보안감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일반인에 대한 위험'이라는 요건 내지 오스트리아에서 감호를 부과하기 위해 요구하는 '장래 재범위험성'이라는 형식요건에 상응하는 조건이 스위스 형법에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다. 또한 성벽(Hang)을 요구하는 조건도 스위스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에서 보안감호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존재했던 문제점과 비슷한 문제점으로 감호집행과 형벌집행의 차이가 없다는 문제점이 스위스에도 존재했고, 따라서 감호집행과 형벌집행의 차별성을 형성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즉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감호집행이 통상적인 형벌집행기관에서와 같고, 결국 형집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서 상습범죄자에 대한 감호처분이 그 운영면에서 책임을 넘는 부정기자유형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스위스에서는 감호집행의 독자성이 요구되었다.

형법개정이후에도 상습범죄자에 대한 감호처분은 더욱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 결과 1983년 이후에는 한해 20여명 정도가 감호처분을 선고받았고, 1990년 이후에는 10명 안팎정도만이 감호처분을 받았다. 스위스 연방법무부에 의하면, 1984년 말 현재, Regenddorf, Ringwil, Thorberg, St. Johannsen, Bostadel, Oberschöngrün, Lenzburg, Realta, Plaine de l'Orbe 그리고 Crêtelongu 등에 있는 보안감호소에 총 55명만이 감호집행을 받고 있고, 그 이후 1987년에 39명, 1988년에 31명, 1989년에 25명, 1990년에 22명, 1991년에 18명, 1992년에 10명이었던 것이 1993년에 불과 9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³¹⁾

이와 함께 감호처분을 위한 중요하고 새로운 전제조건으로 스위스 형법 제68조 1항에 중한 성격장애(tiefgreifenden Persönlichkeitsstörung)를 요건

31) 1995년 8월 21일자 스위스 연방통계청 자료(Kinzig, 앞의 책, 496면).

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형법 제68조 2항의 규정은 독일형법 제67조c 1항의 규정과 유사하여 형벌집행의 종료 후에 감호집행의 필요성 여부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일단 검토된다. 감호집행기관의 이러한 조사의무는 감호집행 동안 처음에는 2년에 그 다음에는 스위스 형법 제68조 7항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된다.

3) 소결

스위스에서는 1979년 이후에 보안감호가 30건 이하이던 것이 1983년 이후에는 20건 이하, 1990년 이후에는 10건 이하로 감호처분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새롭게 개정된 규정을 통해 심각한 성격장애의 요건(das Merkmal einer tiefgreifenden Persönlichkeitsstörung)이 요구됨으로써 감호처분을 받는 대상자가 특정범죄에 국한해서 진정으로 위험한 재범자로 한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안감호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오스트리아

1) 위험한 재범자(gefährlicher Rückfalltäter)에 대한 형법적 처우의 변화

오스트리아에서는 1909년 이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보안감호에 대한 안이 제시되는 등 오랜 기간 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끝에 1975년에 비로소 형법에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시설수용'을 규정함으로써 보안감호제도 도입되었다.³²⁾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보안감호의 도입초기에 보안감호 선고를 위한 형식적 요건이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는 편이어서 법관의 재량범위가 매우 크고 동시에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32) Kinzig, 앞의 책, 502면.

왔다. 오스트리아에서 보안감호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형법 제23조에 위험한 재범자(gefährliche Rückfallstäter)의 수용처분을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위험한 재범자의 수용처분은 독일의 보안감호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³³⁾

- 판결은 만 24세가 넘어야만 한다.
- 전과와 원인범죄(Anlaßtat)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 6월 이상의 전과가 2회 있는 것을 요구한다.
- 그로 인해 18개월 이상 형 집행을 받았어야 한다.
- 전과에 의한 형집행이 18세 이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 감호집행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보안감호선고와 관련하여, 독일에서와 같이 소위 ‘예측’이라는 불확실한 개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연성의 정도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1977년 47명에게 보안감호를 선고한 것을 정점으로 해마다 그 수가 줄어서, 1990년 이후에는 해마다 단지 3명 정도만이 보안감호에 선고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스트리아에 1975년에야 도입된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점들도 독일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는 피보호감호자의 대부분이 본래적 목적에서의 위험한 재범자들이기 보다는 단순 재산범죄자들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2) 현재상황

오스트리아에서 입법자들은 구형법 제23조에 의한 보안감호 수용처분과

33) Kinzig, 앞의 책, 503면.

관련하여 그 선고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1987년 개정형법에서는 보안감호 선고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그러한 형법개정 이후 타인의 재물과 관련한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만약 그러한 재산범죄가 사람에게 대한 폭력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23조에 의한 보안감호를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형법 제23조에 따라 거의 모든 피감호자는 석방되었고, 1990년 이후 단지 3명의 피감호자만이 ‘위험한 상습범죄자를 위한 시설(Anstalt für gefährliche Rückfallstäter)’에 남아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러한 보안감호처분은 “사실상 폐지(De-facto-Abschaffung)”되었다고 이야기되어 질 수 있다.

<표 1> 1988-1994년 오스트리아 형법 제21조 2항 및 제23에 의한 피감호자수

연도	제21조 2항에 의한 피감호자수	제23조에 의한 피감호자수
1988	130	6
1989	123	4
1990	121	3
1991	131	3
1992	145	3
1993	159	3
1994	170	3

3) 소결

오스트리아에서 1975년에 오스트리아 구형법 제23조를 통해 처음 도입한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시설수용, 즉 보안감호제도는 독일의 보안감호와 관련되어서 나타난 문제와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오스트리아에서는 1987년 형법개정을 통해 보안감호 선고요건

을 강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보안감호는 최근에 와서 그 대상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폐지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

마. 네덜란드

1) 위험한 재범자(gefährlicher Rückfalltäter)에 대한 형법적 처우의 변화
네덜란드에서는 1881년 보안처분 중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치료감호(현행 네덜란드 형법 제37조)가 형법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보안처분 중에 치료감호제도만으로는 사회보호의 어려움이 있자, 1911년부터 1928년 사이에 새로운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소위 *terbeschikkingstelling* “*van de Regering(TBR)*”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게 되었다.

TBR제도는 범행당시에 인격발달에 흠결이 있거나 정신상태에 병적인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공공질서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벌과 함께 최소 2년을 기준으로 무제한의 연장이 가능한 구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금은 형벌집행 후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1929년에 네덜란드 형법 제43조 이하에 보안감호(*Bewaring van beroeps- en gewoontemisdadigers*)가 도입되었다.³⁵⁾ 이러한 보안감호를 선고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이미 최소한 3회 이상 그 때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형벌을 받고 총 8년의 형벌을 집행 받은 자가 또다시 범행을 하여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재범의 예방을 위하여

34) 상습범죄자에 대한 제재와는 별개로 현행 스위스 형법 제67조49(Art. 67⁴⁹)와 오스트리아 형법 제39조에 누범가중처벌을 아직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에서 점차 누범가중처벌조항의 폐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조준현, “누범가중처벌조항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교정, 1991/5, 31면 참조).

35) Kinzig, 앞의 책, 510면.

법관이 보안감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감호가 부과되었다. 형의 부과와 함께 선고되는 보안감호의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감호가 일면 경범죄와 관련한 상습범(Gewohnheitstäter)에 대해서는 지나치고, 또 다른 면에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TBR제도가 더 적절하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보안감호규정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법관들에 의해 TBR의 적용빈도가 증가하자, 1933년에 TBR적용과 관련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예컨대 재산범죄와 관련해서 3번의 재범만 있어도 TBR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1947년부터 TBR적용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상당히 높은 재범건수로 인해 보안처분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면서, 법관들은 장기자유형을 보다 많이 부과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2) 현재 상황

네덜란드에서 보안처분입법과 관련하여 최근의 큰 개혁은 1988년에 일어났다. 결국 이러한 개혁을 통해 이원주의의 유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졌다. 즉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모델로 한 보안감호제도를 도입하는 것 대신에 네덜란드에서는 위험한 재범자(gefährliche Rückfalltäter)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예전과 같이 장기자유형과 TBR이라는 두개의 법체계를 통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네덜란드 법에서 독일식 보안감호의 부분적인 기능은 양형단계에서 형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네덜란드 형법에는 우리 형법이나 독일 형법에서처럼 형벌의 제한적 기능을 하는 엄격한 책임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⁶⁾ 따라서 법관은 양형단계에서 범죄자의 위험성까지

36) Sagel-Grande, "Di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m strafrechtlichen

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처럼 네덜란드 형법에는 책임을 넘어서는 형벌부과를 금지하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Schwarzen Reiders”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³⁷⁾

그와 함께 1988년에 종래의 TBR제도는 새로운 형태 “terbeschikkingstelling” (현재는 TBS)로 대체되었다. 즉 새로운 형태에는 독일식 보안감호의 일부기능이 보충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TBS 제도는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는데, 그 하나는 제37a조 이하에 근거한 ‘국가의 원조가 있는 위탁(Überlassung mit Versorgung von Staats wegen)’이고 다른 하나는 제38조 이하에 근거한 ‘국가의 원조가 없는 위탁(Überlassung ohne Versorgung von Staats wegen)’이 그것이다. 법개정의 목표는 원인범죄를 엄격하게 하고 그와 함께 적용범위를 보다 축소하고 처분의 기간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엄밀하게 규정하고 더 나아가 TBS처분을 부과 받은 대상자들의 권리를 세워주는데 있었다.

‘국가의 원조가 있는 위탁(제37a조 이하)’은 범행당시에 인격발달에 흠결이 있거나 정신상태에 병적인 장애의 의심이 존재하고 원인범죄로 최소 4년 이상의 자유형을 부과 받고, 더불어 공공의 안전을 위해 TBS처분의 부과가 요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처우에 있어서는 대상자에게 보다 많은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재사회화를 위해 법적으로 휴가와 조건부 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처우 방법에 있어서도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사회치료도적 구조로 된 생활환경을 통한 사회치료도 함께 병행되어 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안전상의 이유 내지 치료 상의 이유로 일정기간 개별 치료를 요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상자는 그룹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Rechtsfolgensystem der Niederlande”, ZStW 103, 1991, S. 738.
37) Sagel-Grande, 앞의 논문, 738면.

<표 2> 1988-1992년 TBS의 선고와 집행건수

연도	필요적 TBS 선고 (unbedingte TBS-Anordnung)	완성된 TBS 선고 (beendigte TBS-Anordnungen)	TBS 총집행건수 (TBS-Vollzug insgesamt)
1988	90	77	492
1989	94	95	493
1990	95	63	522
1991	117	91	547
1992	98	64	597

이처럼 예전에 비하여 그 전제조건 등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선고된 필요적 TBS건수는 예전의 TBR과 비교해서 결코 줄지 않았다. 오히려 총 TBS 집행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과 1994년에 약 200명 정도까지 TBS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⁸⁾ TBS 대상자 중에 폭력범죄가 원인범죄가 된 비율이 90% 이상으로 증가하고 단순 재산범죄는 더 이상 선고되지 않는다.

3) 소결

네덜란드에서 위험한 재범자의 형벌적 처우를 보면, 보안감호제도를 포기하면서 보안감호제도가 담당하는 공공의 안전의 필요성에 따른 사회보호 기능을 형벌의 장기화를 통해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이나 독일 형법과 같이 책임의 한계(Schuldobergranzde)성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벌의 장기화라는 방향은 그 안에 다양

38) Kinzig, 앞의 책, 519면.

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장기형벌은 법적안전성(Rechtssicherheit)을 해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구조화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 불균형한(Ungleichbehandlung) 양형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네덜란드에서는 위험한 재범자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안감호를 포기하는 대신 그와 같은 기능을 (장기)자유형과 ‘국가의 원조가 있는 위탁(TBS)’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TBS의 실시는 젊은 폭력범죄자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TBS시설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정신능력의 병적장애 혹은 미발달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한정책임능력을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바. 기타 유럽국가들

스웨덴에서는 1981년 이후 특별한 조치로 정신병적 장애자를 정신치료에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에 대한 안전의 필요성에 따른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대응은 따라서 이미 오래 전부터 예외 없이 자유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중한(위험한) 재범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양형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범죄와 관련한 양형에서도 전과가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스웨덴에서 사회보호라는 관점에서 장기의 형벌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눈에 띄게 장기의 자유형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스페인에서는 ‘사회적 위험성과 재사회화에 관한 법률(das Gesetz über soziale Gefährlichkeit und Rehabilitierung)’을 통해 사전범죄적 보안처분과 사후범죄적 보안처분을 혼합한 상습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치료시설수용(Unterbringung in der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의 가능성을 열어 놓

고 있다. 그와 함께 보안감호 혹은 노동의 집 등에의 수용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안처분집행이 형벌집행과 구분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법원에 의해 실시되는 예측방법의 불완성으로 인해 법관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위험성의 존재여부에 대해 확정하는 것을 많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책임능력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보안처분을 선고하지 않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안처분이 점차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점차적인 이원주의의 폐지가 요구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에 보안감호의 일종인 “relégation”이 “보안관찰(tutelle pénale)”로 대체되다가 결국은 1981년에 폐지되었다. 프랑스에서 보안감호와 비교할 수 있는 제재가 그 이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이후로 보안감호의 기능은 형벌가중을 통해서 달성되고 있다. 결국 다양한 범죄와 관련한 재범에 대한 형벌가중규정과 함께 최소 10년 이상의 자유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위 안전기간(période de sûreté)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수용자에게 일정기간동안 형의 감경 내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헝가리에서도 보안감호의 실무 적용과 관련한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자주 비판이 되어 왔다. 헝가리에서의 문제도 대략 80%의 피감호자가 고의의 재산범죄로 보안감호 선고를 받았다는데 있다. 결국 1989년 12월에 보안감호제도는 폐지되고 실무에서 형벌가중제도를 발전시켰다. 새로운 형법개정안은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3. 독일의 상습범 처우 현황

1) 위험한 재범자(gefährlicher Rückfalltäter)에 대한 형법적 처우의 변화

독일에서는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33년 ‘상습범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소위 보안처분 특히 상습범에 대한 보안감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안감호의 도입은 1913년의 형법초안 이래 형법개정운동의 중요한 목표로 보안처분제도의 도입여부가 제안된 이후로 오랜 논쟁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969년 형법개정이 있기까지 보안감호는 그 내용의 변화 없이 독일 구형법 제42의e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감호처분이 부과되기 위해서 우선 같은 법에 의해 독일 구형법 제20의a조에 규정된 상습범가중처벌규정과 연계하여 “제20의a조에 따라 위험한 상습범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 법원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벌과 함께 보안감호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독일 형법에 의해서 위험한 상습범죄자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습성으로 인한 가중처벌과 함께 보안감호를 병과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상습범에 대하여 이처럼 형벌가중과 보안감호를 병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선 독일 구형법 제20의a조에 규정된 상습범에 대한 형벌가중은 행위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즉 독일 구형법 제20의a조에 의한 형벌가중의 근거는 ‘책임’이 아니라 ‘위험성’에 근거하여 형벌가중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위험성’이 형벌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동규정에 의한 형벌가중의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독일은 1969년 제1차 형법개정법률(Strafrechtsreformgesetz)에 의하여 구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상습범 가중처벌조항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독일에서는 1986년 제23차 형법개정에서 삭제되기 이전에 형법 제

48조에 일반적 누범가중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독일 형법 제48조는 이미 2회 이상 형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범죄의 1개 또는 수개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자유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금 고의의 범죄행위를 행한 자로서 이전의 형의 선고를 경고로 여기지 아니하였음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때, 이를 누범으로 규정하면서, 누범의 형은 그 범죄에 대하여 보다 높은 하한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 형의 하한은 6월의 자유형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정하여진 자유형의 상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³⁹⁾

독일 형법 제48조에 규정된 누범가중조항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이 제기 되었는데, 그 하나는 ‘행위자가 이전의 형의 선고를 경고로 여기지 아니하였음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때’의 실질적 누범요건에 대한 문제점이고, 다른 하나는 형의 하한을 6월로 하는 형의 가중에 대한 문제점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미 형벌에 의해 주어진 경고기능의 위반이 과연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누범의 많은 경우가 의지박약, 인격적 결함 또는 사회원조의 결핍 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1984년에 형법 제48조의 누범가중처벌조항은 폐지되고 형법 제46조 제2항의 ‘행위자의 전력(Vorleben des Täters)’이 양형에 있어서 행위자의 전과를 고려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법관은 일반적인 양형의 원칙에 따라 누범을 양형의 요소로써 파악하게 되었다. 아울러 그 처우에 있어서는 보안처분의 하나로써 독일 형법 제66조에 규정된 ‘보안감호에의 수용(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독일 형

39) 장규원,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46면 참조.

40) 독일에서는 Hanack와 Baumann 등 독일 선택초안의 제창자들에 의하여 책임주의의 원칙과 일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이 강력히 부정되어, 결국 1984년에 누범가중을 폐지하였다(Hillenkamp, “Zur materiellen Rückfallklausel des § 17 StGB”, GA, 1974, S. 214).

법에는 누범가중처벌조항이나 상습범가중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위험한 상습범죄자에 대처는 보안감호를 통해서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상습범과 사회치료 처우

독일에서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1984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독일 형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던 사회치료(Sozialtherapie)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치료(Sozialtherapie)라는 용어는 형법,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1947년에 이미 Viktor von Weizsäcker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개념을 환자의 사회환경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정신요법적 방법으로 이해하였다.⁴¹⁾ 그러나 당시에는 '사회치료'를 이용하여 범죄자를 처우한다는 발상에는 이르지 못하고, 1966년 형법개정대안 제69조에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Die Unterbringung in einer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이 새로운 보안처분의 하나로 제안된 이래 형사법 영역의 용어로서 사용되었다.⁴²⁾

독일에서는 1960년대 형법개정작업에서 소위 대안파 교수들에 의하여 제안된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입법화함으로써 상습범죄자나 처우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에 1969년 제1차 형법개정법(Strafrechtsreformgesetz)에서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을 형법 제65조에 신설하였다. 그러나 1974년 제2차 형법개정법에서 사회치료처분을 규정한 제65조에 대하여 시설정비와 확보에 따른 시간문제 등의 이유로 그 시행이 연기되다가 1984년 삭제되고 말았다.⁴³⁾

41) Steller, Sozialtherapie statt Strafvollzug, 1977, S. 11.

42) Alternativ-Entwurf eines StGB, A.T., 2.Aufl., 1969, S. 133ff. 참조.

43) 독일에서는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처분의 완전 실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격심한 논쟁이 있었다. 그 중 하나로 1984년 9월 15일에 독일연방 법무위원회 주최로 '사회치료처분규정 삭제와 관련법규의 개정'의

독일 형법 제65조의 사회치료시설수용처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사회치료처우’에 관하여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 진 것은 아니다. 비록 보안처분에서 사회치료시설수용처분은 삭제가 되었지만 독일 행형법 제9조에 이미 형집행 영역에서 사회치료처우의 존속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과 또 독일 행형법 제130조에 동법 제9조와 연계하여 보안감호대상자의 경우에도 사회치료처우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처음에 독일 형법 제65조의 사회치료시설 수용처분은 정신병원에서의 수용(제63조), 금단시설에서의 수용(제64조), 보안감호시설에서의 수용(제66조)과 함께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구상되었다. 그 대상자는 ① 중대한 성격장애(schwere Persönlichkeitsstörung)에 따른 상습범죄자, ② 위험한 성적 충동범, ③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미성년 범죄자, ④ 정신장애 범죄자의 4가지 행위자 유형을 열거하고 있었다.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의 내용은 의료처치적 성격과 보안조치적 성격의 양면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치료처분은 ‘개선·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순서, 수용기간 등에 있어서 정신병원 수용처분(제63조)의 치료적 처분에 가까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65조의 수용기간은 5년을 최고 기한으로 하고 있지만, 제65조 제3항(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사회치료처분)의 경우에는 제63조와 같이 기간에 제한이 없었으며,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처분우선집행주의와 필요적 대체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치료처우의 실시는 형법 제65조의 삭제에 의해 소위 ‘보안처분에 의한 해결(Maßregelösung)’을 포기하고 행형법 제9조에 의한 이른바 형의 ‘집행에 의한 해결(Vollzugslösung)’에 의하게 되었다. 현행 독일 행형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서는 장규원, “독일형법 제65조(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의 삭제와 상습누범자의 대책 - 독일연방법무위원회 주최 공청회의 토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16호, 1993, 참조.

법 제9조 제1항에는 “수형자는 독일 형법 제174조 내지 제180조 및 제18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고 독일 행형법 제6조 제2항 2문 혹은 동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한 사회치료시설에서 치료받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사회치료시설로 이송된다. 만약 수형자가 개인적인 이유에서 치료의 목적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 본래의 수용시설로 이송된다”, 제9조 제2항은 “다른 수형자들은 특별한 치료적 방법과 시설의 사회적 도움이 그들의 재사회화에 적절하다고 보이고, 수형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회치료시설에 이송한다. 이 경우 사회치료시설장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법 제65조의 삭제와는 관계없이 형집행 범위 안에서의 사회치료처우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전의 행형법 제9조에 의하면 모든 사회치료수용 대상자들의 동의와 함께 시설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8년 소위 “성범죄 및 위험한 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und anderen gefährlichen Straftaten)”을 계기로 행형법 9조에 독일 형법 제174조 내지 제180조 그리고 제182조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자의 경우는 필요적으로 사회치료처우를 받게 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범죄와 관련한 수형자들은 본인의 동의와 사회치료시설 장의 동의가 있는 때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치료를 통해 재범가능성을 해소하겠다는 입법자의 목적이 담겨있다고 한다.⁴⁴⁾

3) 현재상황

독일에서는 1970년경부터 각주에서 사회치료시설을 갖추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2004년 3월 31일) 총 43개의 사회치료시설을 두고 약 1,500여명 정

44) Expertenkolloquium “Sozialtherapeutische Behandlung von Sexualstraftätern”, S. 10.

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록1의 <표> 참조). 이러한 사회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치료필요성(Behandlungsbedürftigkeit)과 치료가능성(Behandlungsfähigkeit)이다.⁴⁵⁾ 즉 다시 말하면 수형자가 이러한 특별한 치료유형에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치료의 유형과 내용은 각각의 사회치료시설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사회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⁴⁶⁾

독일에서 실질적으로 보안감호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사회치료시설 내에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그 실태를 통하여 위험한 상습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치료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일의 16개 州법무부에 자료협조를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⁴⁷⁾

45) Kaiser/Schöch, Strafvollzug, 2002, S. 415.

46) Kaiser/Schöch, 앞의 책, 416면.

47) 참고로 전체적인 상황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州	자료요청횟수	답변여부	보안감호대상자 사회치료여부	사회치료처우내용
Baden-Württemberg	2	○	사회치료가능(5명)	1998. 9. 19 내규 규정
Bayern	2	×	-	-
Berlin	2	○	사회치료가능(1명)	5가지 중점 프로그램
Bremen	1	×	-	-
Brandenburg	1	○	사회치료가능(2명)	SOTP(BPS)프로그램사용
Hamburg	1	×	-	-
Hessen	2	○	사회치료가능(4명)	카셀치료시설 환경치료 중점
Mecklenburg-Vorpommern	1	×	-	-
Niedersachsen	1	○	사회치료가능(3명)	BPS 및 독자적인 프로그램 운영
Nordrhein-Westfalen	2	×	-	-
Rheinland-Pfalz	2	○	사회치료 안함	-
Saarland	1	○	보안감호시설 없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로 이송
Sachsen	2	○	보안감호대상 없음	-
Sachsen-Anhalt	1	○	보안감호대상 없음	SOTP프로그램사용
Schleswig-Holstein	1	×	-	-
Thüringen	1	○	보안감호대상 없음	-

우선 과거 구동독지역에 속해 있었던 주에서는 아직 보안감호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achsen州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구동독 형법 제161조에 의거한 보안감호는 독일 통일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1990년 독일 통일과 함께 구서독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현재의 독일 형법 제66조에 의거한 보안감호대상자의 집행이 2005년이 되어야 비로소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과거 구동독에 속했던 Sachsen州, Sachsen-Anhalt州, Thüringen州 등에는 보안감호대상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치료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역시 구동독지역의 Brandenburt州에서도 2건의 보안감호사례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보안감호 담당부서 조차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보안감호 사례가 발생하면 베를린으로 이송시킨다고 한다. 그와 함께 아직 보안감호 대상자중에 사회치료대상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사회치료처우와 관련하여서는 담당부서를 두고 캐나다와 영국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을 대상자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소 변형하여 폭력범죄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위 인격장애(Persönlichkeitsstörung)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사회치료시설 자체가 환경치료에 적절하도록 친사회적으로 만 들어서 사회치료대상 수형자들의 인격구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구동독지역 법무부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대체적으로 과거 구동독지역에서는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대응을 구서독과 같이 보안처분(보안감호)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형벌가중을 통하여 소위 상습범죄자들에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서독지역에 속하는 州에서도 보안감호 집행과 관련하여 각각의 주마

다 그 상황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Saarland州와 같이 작은 주에서는 독자적인 보안감호부서를 두지 않고 그 집행과 관련해서는 Nordrhein-Westfalen州에 일임하는 것으로 Saarland州법무부에서 말하고 있다.

Baden-Württemberg州에서는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5명의 보안감호대상자가 사회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대상자 선정은 독일 행형법 제9조 및 1998년 9월 10일자 내규(Runderlass)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동내규에 따르면, 사회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해서 성범죄 관련 범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그 밖의 범죄와 관련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공통된 사항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와 함께 소위 치료필요성(Therapiebedürftigkeit)과 치료능력(Therapiefähigkeit)이 요구되는데, 특히 치료능력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우선 치료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과 함께 언어능력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40세가 넘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약물중독이 있는 경우도 제외하고 있다. 또 정신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치료와 관련하여 직장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결합능력(Bindungsfähigkeit)과 반사능력(Reflexionsvermögen)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된다. 특히 수형자 중에 치료에 적절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성격장애가 있거나 조직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⁴⁸⁾

Rheinland-Pfalz州에서는 약 4,000명의 수형자들 중에 사회치료시설에서 약 70명 정도의 대상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습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안감호대상자 중에는 사회치료대상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

Berlin州에는 현재 사회치료시설에 13명의 대상자가 수용되어 있으며, 그 중에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온 대상자는 1명 있다고 한다. 사회치료 대

48) 4428-IV/17, Runderlass vom 10. 09. 1998, VVV.

상자의 요건에는 당연히 독일 행형법 제9조의 요건과 함께 치료필요성과 치료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베를린에 있는 사회치료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프로그램에는 5가지의 중점프로그램을 두고 있는데,

-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행동양식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 심층심리에 바탕을 둔 중점과제(개별상담 및 집단치료)
- 행동치료적 중점과제(집단치료 및 개별상담)
- 환경치료적 중점과제(사회배우기)
- 반폭력성 훈련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치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안감호대상자만을 위한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었고, 일반적으로 보안감호대상자들의 경우 성격장애(Persönlich keitsstörung)의 경우가 심각하기 때문에 심층심리(tiefenpsychologisch) 특히 행동치료(verhaltenstherapeutisch)에 중점을 두고 치료하였다고 한다.

Hessen州에는 카셀지역에 유일한 사회치료시설을 두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9조에 근거한 '헤센 시행규칙(Hessischen Ausführungsbestimmungen: HAB)'에 규정된 전제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들은 이곳에 수용되어 처우를 받게 된다. 즉 독일 행형법 제9조 제1항 1문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성인 수형자들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와 함께 독일 행형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치료요구(Therapiebedürftigkeit), 치료능력(Therapiefähigkeit), 치료필요성(Therapienotwendigkeit), 치료동기(Therapiemotivation) 등이 함께 고려된다.

2004년 3월 31일 현재 헤센州 카셀에 있는 사회치료시설에는 140명의 대상자가 수용되어 처우를 받고 있으며, 그 중에 4명이 독일 형법 제66조에 의하여 보안감호를 부과 받은 대상자들이다. 사회치료시설에서 처우 받기 위해서는 일반수형자이든 보안감호대상자이든 기본적으로 행형법 제9조

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보안감호대상자의 경우 특별한 조건을 전제하고 있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가출소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상자의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⁴⁹⁾ 이는 아마도 치료의 종료와 함께 가출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시 보안감호소에 구금되어 치료효과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사회치료시설에서 보안감호대상자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회치료시설에 수용된 일반수형자의 경우에도 치료대상이 되는 장애면에서 큰 차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셀사회치료시설에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치료(Milieuthérapie)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치료방법은 성격장애를 가진 수형자들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다. 물론 그와 함께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형자들에 대하여 개별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독일의 Niedersachsen州에 2004년 8월 말 현재 성인수형자와 관련하여 5개의 사회치료부서(Lingen, Uelzen, Hannover, Meppen, Vechta)가 존재하고 총 221명이 사회치료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그 중에 154명이 성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성인수용자 154명중에 3명이 성범죄로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로서 사회치료를 받고 있으며, 3명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다고 한다. 그 중 한 명은 성범죄관련으로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사회치료시설에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Niedersachsen州에서 보안감호대상자가 사회치료시설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치료필요성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는 성폭력위험(Sexual Violence Risk(SVR-20)),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위험(Rückfallrisiko bei Sexualstäftätern(RRS)), 정신병체크리스트

49) Abs. 1.2 der HAB zu § 9 StVollzG.

(Psychopathy-Checklist(Screening-Version: PCL: SV)) 등이 있다. 성범죄 외의 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치료처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SVR-20대신에 HCR-20을 사용하여 치료동기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치료시설에서 특히 성범죄자들에게는 “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Behandlungsprogramm für Sexualstraftäter: BPS)”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주로 심리적 행동양식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되는 모델을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그밖에도 Niedersachsen州에서 자체 개발한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안감호대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감호대상자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두고 있지는 않다.

Niedersachsen州의 사회치료시설에서는 최근에 소위 “성격장애(Persönlichkeitsstörung)”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부분적으로는 성격장애 치료에 중점을 둔 처우가 시도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보다 많은 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더불어 현재 Niedersachsen州에서 보안감호처분 중에 있는 대상자는 23명이고 그 중에 13명이 성범죄자라고 한다. 또한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현재 형벌집행중인 수형자가 41명이 있으며, 그 중에 18명이 성범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4) 재범위험성 판단

독일에서 보안처분(치료감호 내지 보안감호)을 부과 받게 될 대상자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246의a조에 의거하여 의료적 전문가(Ärztlicher Sachverständiger)에게 감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의료적 전문가집단에는 정신과전문의뿐만 아니라 신경과전문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와 함께 심리학자도 보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집단의 진단

에는 의료적 내지 정신과적 진단뿐만 아니라 법규범적인 문제까지도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전문가집단의 진단에는 반드시 재범위험성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감호를 부과하기 위한 전제요건의 존재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법관들은 이러한 전문가집단의 판단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⁵⁰⁾

또한 법관은 보안감호대상자의 재범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의료적 진단결과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성벽(Hang), 전과유무, 대상자의 성벽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대상자의 인격·생활태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실무에서 재범위험성 판단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유사범죄와 관련한 전과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한다. 즉 범행빈도 내지 재범속도(Rückfallgeschwindigkeit)가 재범위험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바탕으로 한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법관들이 반드시 의료전문가집단의 진단결과를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집단의 진단결과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¹⁾

5) 소결

독일은 전통적으로 위험한 재범자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안처분제도의 하나인 보안감호제도(Sicherungsverwahrung)를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도 ‘보안처분 위기론(Krise der Zweispurigkeit)’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보안감호제도를 포기

50) Kinzig, 앞의 책, 574면 이하 참조.

51) Kinzig, 앞의 책, 576면 이하 참조.

보다는 그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그 적용을 제한하면서 유지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위험한 재범자 내지 상습범죄자들에 대한 대응방안과 차이점은 독일은 과거와 다르게 상습범가중처벌이나 누범가중처벌 조항을 더 이상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⁵²⁾ 더불어 각각의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1998년 “성범죄 및 위험한 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und anderen gefährlichen Straftaten)”을 통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적극적으로 사회치료시설에 보내서 치료처우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보안감호를 부과 받은 대상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이처럼 위험한 재범자 내지 상습범죄자들에 대하여는 - 형벌을 부과 받은 경우이든 보안감호를 부과 받은 경우이든 - 사회치료를 통하여 그 범죄요소를 제거하여 사회적 위험의 감소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독일의 보안감호대상통계와 사회치료통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2) 1991년 형법개정시안을 보면, 누범가중처벌은 국제적인 추세라는 관점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상습범 가중처벌은 책임형법에 반한다는 관점에서 보안처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형사법개정자료 XIV, 1992, 15면 이하 참조; 김혜정, “현행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정책적 재조명”,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2003, 149면 참조).

<표 3> 독일의 보호감호 추이

년도	보안감호 총인원	총 수행자 중 보안감호비율	先형벌집 행 비율	연령별 보호감호자 비율				
				20<30	30<40	40<50	50<60	60이상
1965	902	1.8	99.7	0.8	30.8	28.3	27.3	12.9
1970	718	2.0	100.0	0.7	25.5	39.1	22.5	12.3
1975	337	1.0	98.5	0.3	16.6	54.9	19.3	8.9
1980	208	0.5	99.5	0.0	11.5	54.3	28.4	5.8
1985	190	0.4	99.5	106	11.1	37.9	40.5	8.9
1990	182	0.5	97.8	0.5	12.6	33.0	41.2	12.6
1995	183	0.4	96.7	0.5	13.1	36.1	39.3	16.9
2000	219	0.4	96.3	0.0	7.3	41.1	34.7	16.9

자료 : Kaiser/Schöch, Strafvollzug, 2002. S. 428

<표 4> 1997-2004년 사회치료시설의 인원

매해 3월 31일 현재	사회치료시설수	수용가능인원	수용된 인원	수용비율(%)
1997	20	888	825	92.9
1998	22	917	850	92.7
1999	23	982	929	94.6
2000	27	1,055	1,053	99.8
2001	28	1,086	1,086	100
2002	31	1,201	1,160	96.6
2003	38	1,509	1,335	88.5
2004	43	1,742	1,571	90.2

자료 : <http://www.krimz.de/forschung/sozialtherapie.html>

<표 5> 사회치료수용자의 범죄유형

매해 3월 31일 현재	성범죄(%)	살인범죄(%)	재산범죄(%)	기타 범죄(%)	계
1997	191(23.2)	181(21.9)	367(44.5)	86(10.4)	825
1998	224(26.4)	196(23.1)	339(39.9)	91(10.7)	850
1999	315(33.9)	187(20.1)	326(35.1)	101(10.9)	929
2000	388(36.8)	219(20.8)	305(29.0)	141(13.4)	1,053
2001	437(40.1)	214(19.7)	286(26.3)	152(14.0)	1,089
2002	526(45.4)	221(19.1)	260(22.4)	152(13.1)	1,159
2003	685(51.3)	249(18.7)	245(18.4)	156(11.7)	1,335
2004	870(55.4)	298(19.0)	244(15.5)	159(10.1)	1,571

자료 : <http://www.krimz.de/forschung/sozialtherapie.html>

4. 상습범죄자 교정처우 모델 소개

- 독일의 '빌레펠트 모델(Bielefeld Modell)'을 중심으로 -

여러 교정처우 모델 중에서 오늘날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재통합 모델에 바탕을 둔 사회치료처우는 새로운 처우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상습범죄자나 위험한 성적 충동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미성년 범죄자, 정신장애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회치료시설(sozialtherapeutische Anstalt)에서 독일 형형법 제9조에 의한 이른바 형의 '집행에 의한 해결(Vollzugslösung)'에 의하여 사회치료처우를 통해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에 폐쇄시설 내에서의 처우를 회피하면서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의 협력아래 일반사회의 각종 시설이나 기관을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꾀하고

있다.⁵³⁾

상습범죄자에 대한 사회치료와 관련하여 사회치료처우의 모델로서 ‘빌레펠트 모델(Bielefeld Modell)’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은 사회치료전문가 회의의 연구프로젝트 그룹에서 약 2년에 걸쳐 각각 분담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독일을 비롯하여 각국의 행형실무 경험에서 제안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모델은 개선처벌의 하나인 형법 제65조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의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방법으로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 주로 폭력성 내지 상습범죄자에 대한 행형상 집행방법의 하나로 구상된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2~5년의 유기자유형을 받은 비교적 무거운 범죄(원칙적으로 죄의 종류는 문제 삼지 않지만 폭력상습범이 중심이 된다)를 두 번 이상 범한 누범자를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처우의 대상으로 한다.

이 모델의 특색은 이른바 사회치료법을 이용해서 중한 폭력성 누범자에 대하여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에 폐쇄시설 내에서의 처우를 회피하면서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의 협력아래 일반사회의 각종 시설이나 기관을 활용하여 사회복귀의 추진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치료’는 의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교육학적 등 오늘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에 의해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고 나아가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개의 대상자가 사회생활 집단에서 타인과 관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이나 결함을 스스로 자각하여 서서히 자력으로 생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극복기술을 습득시켜 건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⁵⁴⁾ 사회치료의 방법에는 정신분석치료, 정신요법, 진단요법, 행동요법,

53) 장규원, 앞의 보고서, 37면.

54) Mauch, Sozialtherapie und di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1971, S. 27ff. 참조.

접촉요법, 작업요법, 약물요법, 음악요법 등을 들 수 있다.

처우는 단계적 처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제1단계는 중앙시설(Zentralanstalt)이라는 폐쇄된 시설에 수용한다.⁵⁵⁾ 기간은 6개월, 수용인원과 직원 수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과거의 생활태도 등에 관하여 총 점검하고 아울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미래의 생활설계의 확립이 중심이 된다. 여기에서는 다음의 단계적 처우가 전개된다.

- ① **오리엔테이션 시간** : 새로 들어온 수용자에 대한 각종 처우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다른 수용자 및 시설직원과 면담을 갖는다거나 집중훈련 등에 참가하게 한다.
- ② **처우프로그램의 결정** :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한다. 즉 주거그룹 확정, 제2단계에서 실시되는 자매시설의 결정, 제1단계의 나머지 기간동안의 처우프로그램의 결정(작업 및 작업시간의 확정, 계호의 정도결정을 비롯하여 치료·학교·각종 코스·스포츠의 4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한다.
- ③ **프로그램 참가시간의 확정** : 처우프로그램에는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의무적 참가의 처우프로그램에는 앞으로의 직업발견코스, 직업훈련코스, 형무작업이 있으며 수용자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 가운데 한 가지에 참가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불되고, 주당 28~30시간이 할당되어야만 한다. 한편 참가를 의무화한 프로그램에는 치료, 학교, 각종 코스, 스포츠 등 4가지이다. 수용자는 4개 가운데 3개를 선택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당 10~12시간이 할당된다. 시간 배분은 야간학교 및 성인학교, 축구 등 스포츠클럽활동, 심리요법 등의 자유스러운 참가프로그램에 따라

55) 중앙시설은 덴마크의 링게(Ringe) 행형시설과 네덜란드의 Dr. van der Hoeven-Kliniek을 모델로 하고 있다(장규원, 앞의 보고서, 58면 참조).

변경할 수 있다.

- ④ **주거그룹의 확정** : 수용자는 6~8명의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수용하며, 한 그룹에 심리 담당직원 또는 교사 1명,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1명, 처우직원 6~8명을 배치한다. 처우결정의 방침은 주거그룹의 심리 담당직원, 사회복지사, 담당 처우직원 중의 3사람 합의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거그룹의 목적은 수용자가 될 수 있는 한 일반 사회인과 비슷한 형태에서 시설 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수용자 스스로 청소하고, 세탁하며, 주변 정리를 한다거나 시설용 화폐소지가 허용되며, 간단한 자치도 인정된다. 한편 윤번제 식사당번, 직원과 함께 일용잡화 및 식료품을 사들이는 일도 있다. 주거그룹은 주2회 담당직원과 함께 하는 회합을 가지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주거그룹 및 각 구성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다.

중양시설에서의 약 6개월의 처리기간이 지나가면, 제2단계로서 대부분의 수용자는 자동적으로 자매시설이라 불리는 개방시설로 이송된다. 이 이송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이송 3개월 전부터 중양시설의 처우 담당자와 자매시설의 직원이 충분한 협의를 한다. 그리고 이송 후 3개월 동안은 중양시설의 처우담당자가 적절한 조언을 한다. 자매시설수용 규칙에 반할 경우에는 중양시설로 보내어진다. 자매시설은 수용정원이 15명이고 7~8명의 직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수용기간은 약 1년으로 한다. 이 조직은 될 수 있는 한 일반사회의 공동거주와 유사하다. 제2단계에서는 개방적 분위기 속에서 수용자의 완전한 자립을 그 처우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가능한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조건, 임금조건으로 취업을 시킨다거나 직업훈련을 시킨다. 한편 야간이나 주말에는 될 수 있는 한 석방후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하게 한다.

제3단계에서는 남은 형기 동안(약 6개월) 보호관찰이 부과된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대상자가 희망한다면 교육, 직업훈련, 여가시간 활동에 대한 원조를 한다. 여기에서는 예컨대 네덜란드의 우트레흐트(Utrecht)에서 마약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회 Net-Work 요법’이 고려된다. 이는 대상자의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대상자가 다니게 되는 직장에서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이 그들을 참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체험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체계 내에 동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표 6> 독일 사회치료시설(2004년 3월 31일 현재)

시설명	開所	州	대상
Adelsheim	1997	Baden-Württemberg	소년
Asperg	1976	Baden-Württemberg	성인남성
Crailsheim	1982	Baden-Württemberg	소년
Amberg	2001	Bayern	성인남성
Bayreuth	2001	Bayern	성인남성
Erlangen	1972	Bayern	성인남성
Kaisheim	2003	Bayern	성인남성
München	1972	Bayern	성인남성
Würzburg	1997	Bayern	성인남성
Berlin-Neukölln	1988	Berlin	성인여성
Berlin-Tegel	1970	Berlin	성인남성
Brandenburg	1999	Brandenburg	성인남성
Hamburg Altengamme	1984	Hamburg	성인남성 및 여성
Hamburg Bergedorf	1969	Hamburg	성인남성
Hamburt Hahnöfersand	1998	Hamburg	소년
Hamburg Fuhlsbüttel	2000	Hamburg	성인남성
Kassel	1980	Hessen	성인남성
Alfeld	1993	Niedersachsen	성인여성
Bad Gandersheim	1973	Niedersachsen	성인남성
Hameln	1980	Niedersachsen	소년
Hannover	1994	Niedersachsen	성인남성
Lingen	1994	Niedersachsen	성인남성
Meppen	2003	Niedersachsen	성인남성
Uelzen	2003	Niedersachsen	성인남성
Vechta	2003	Niedersachsen	젊은 범죄자

시설명	開所	州	대상
Aachen	1996	Nordrhein-Westfalen	성인남성
Bochum	2004	Nordrhein-Westfalen	성인남성
Detmold	2003	Nordrhein-Westfalen	성인남성
Euskirchen	1996	Nordrhein-Westfalen	성인남성
Gelsenkirchen		Nordrhein-Westfalen	성인남성
Schwerte	2004	Nordrhein-Westfalen	성인남성
Siegburg	1979	Nordrhein-Westfalen	소년
Willich	2003	Nordrhein-Westfalen	성인남성
Diez	2003	Rheinland-Pfalz	성인남성
Ludwigshafen	1972	Rheinland-Pfalz	성인남성
Saarbrücken	2003	Saarland	성인남성
Bautzen	2003	Sachsen	성인남성
Dresden	2004	Sachsen	성인여성
Waldheim	1995	Sachsen	성인남성
Zeithain	1999	Sachsen	소년
Halle	2001	Sachsen-Anhalt	성인남성
Lübeck	2003	Schleswig-Holstein	성인남성
Tonna	2002	Thüringen	성인남성

IV. 현지조사 연구

-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를 대상으로 -

1. 대상자의 기초자료

본 연구에 참여한 총 162명의 참여자들의 나이는 24세에서 69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42.2(± 8.59)세, 평균 교육연한은 7.9(± 2.83)년, 초범 연령은 8세에서 39세까지로 평균 19.4(± 4.85)세였다(표 7).

<표 7> 검사 참여자의 신상자료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나이	24	69	42.22	8.59
교육연한(year)	.0	16.0	7.88	2.83
초범연령	8	39	19.38	4.85
전과	2	18	7.92	3.22
징역기간(year)	2.08	27.00	11.55	4.91
감호회수	1	3	1.51	.65
감호기간	.01	13.07	3.78	3.55
복역기간(징역+감호)	3.67	36.92	15.97	6.45

검사참여자의 범죄 유형은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 검사 참여자의 범죄 유형

	빈도	백분율(%)
절도	76	46.9
강도	62	38.3
폭력	12	7.4
성폭력	5	3.5
사기	4	2.5
강간	2	1.2
약취유인	1	0.6
총계	162	100.0

2. 검사결과

가. 진단편람에 의한 I축 장애(정신과적 진단)

I축 장애는 정신과적 진단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SCID-I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을 직접 면담하였는데 총 37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들 중 17명(45.9%)이 물질관련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9).

<표 9> I축 장애 진단 분포

I축 장애	인원
특정공포증	2명 : 혈액-주사-외상공포 1명, 동물공포 1명
공황장애	1명
주요우울증	3명 : 단발성 2명, 반복성 1명
기타 우울장애	4명 : 경증 우울증 3명, 경증 우울증 + 기타 우울장애, 경증 우울증 + 야뇨증, 틱장애 1명
물질관련장애	6명 : 알코올 의존 1명, 알코올의존 + 암페타민 남용 1명, 알코올 남용 4명,
일차성 불면증	1명

나. 진단 편람에 의한 II축 장애(성격장애)

II축 장애는 성격장애 유무를 보는 것이다. 총 58명에 대해 SCID-II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들 중 28명(48.3%)이 성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18명(31.3%)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10> II축 장애 진단 분포

II축 장애	인원
반사회적 성격장애	18명
강박성 성격장애	3명
분열성 성격장애	2명
수동공격성 성격장애	1명
회피성 성격장애	1명
편집성 성격장애	1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격장애	2명

한편 초범연령이 낮을수록 경계선 성격장애와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범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고려치 않는 행동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1).

<표 11> 초범연령과 성격장애 간의 상관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초범 연령	Pearson 상관계수	-0.28	-0.28
	유의성	p<.05	p<.05

감호회수와 성격장애의 연관성을 보면 나이를 통제하였을 때 감호회수와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향과 정적 상관($r=.29$, $p<.05$, $df=54$)을 보였다.

다. 충동성 및 분노척도

총 162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충동성(기능적, 역기능적 충동성 척도),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현 및 분노조절에 대해 알아보고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상태분노란 특정상황에서 느끼는 분노를 말하며 특성분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양상의 성격적 분노를 말하는 것이다. 충동성 척도 점수와 분노척도 점수를 <표 12>와 <표 13>에 나타내었다.

<표 12> 충동성 척도 점수

		평균	표준편차
기능적, 역기능적 충동성	기능적 충동성 척도	-0.853	1.26
	역기능적 충동성 척도	1.352	2.00

<표 13> 분노척도 점수

		평균	표준편차
분노척도	상태분노	13.38	5.08
	특성분노	16.41	4.33
	분노표현	12.25	3.46
	분노억제	12.77	3.57
	분노조절	19.90	6.09

1) 충동성과 분노척도의 연관성

충동성 검사의 점수가 높아지면 상황분노 수준과 특성분노 수준 및 분노표현, 분노억압 역시 높게 나왔다. 반면 분노조절은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충동성과 분노척도의 상관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현	분노억제	분노조절
기능적 충동성	Pearson 상관계수	0.24	0.25	0.23	0.22	-0.21
	유의성	p<.01	p<.01	p<.01	p<.01	p<.01
역기능적충동성	Pearson 상관계수	0.26	0.38	0.24	0.34	-0.23
	유의성	p<.01	p<.001	p<.01	p<.001	p<.01

초범 연령과 분노표현척도의 분노 조절 점수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첫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높을수록 분노조절 점수가 낮게 나왔고, 또 분노조절 점수가 낮게 나온 사람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r=-.17$, $p<.05$)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r=.52$, $p<.001$). 또한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분노표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 분노척도와 분노 표현 척도 중 분노표현과 분노억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분노조절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표 15).

<표 15> 특성분노척도와 분노표현척도 간의 상관

		분노표현	분노억제
상태분노	Pearson 상관계수	0.44	0.50
	유의성	p<.001	p<.001
특성분노	Pearson 상관계수	0.65*	0.52
	유의성	p<.001	p<.001

분노표현과 분노억제 간에는 정적 상관($r=.60$, $p<.001$)을 보이지만, 이들과 분노조절 간에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분노표현과 분노억제는 SCL-90-R의 9개 증상척도 모두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분노조절은 불안 공포 증상에서만 매우 약한 부적 상관($r=-.18$, $p<.05$)을 보였다(표 16).

<표 16> 분노표현척도와 간이정신검사척도 간의 상관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증	불안 공포	적대감	공포	편집증	정신증
분노 표현	Pearson 상관계수	0.38	0.41	0.53	0.42	0.43	0.63*	0.41	0.50*	0.36
	유의성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분노 억제	Pearson 상관계수	0.38	0.50	0.56**	0.56**	0.50	0.49	0.40	0.50	0.45
	유의성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2) 기능적, 역기능적 충동성과 성격장애의 연관성

기능적 충동성의 점수가 높아지면 분열성 성격장애($r=.31$, $p<.05$)와 자기애성 성격장애($r=.29$, $p<.05$) 경향이 같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기능적 충동성 점수가 높아지면 경계선 성격장애($r=.32, p<.05$) 성향이 같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충동성이고, 역기능적인 충동성을 지닌 사람은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충동성에 해당하는 진단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라. 전두엽 기능

1) 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

총 58명을 대상으로 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WCST)를 사용하여 전두엽 기능을 측정하였다. 검사결과 피보호감호자의 평균 연령(42세)과 평균 교육 연한(8년)을 기준으로 WCST 원점수 평균들을 규준(demographically corrected normative data)과 비교해 보았을 때 총 오차 수는 62.59로 약 5.5percentile, Categories 완성 수는 2.61로 약 8percentile, Failure to maintain set은 1.12로 약 15percentile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전체 피 보호감호자들의 평균 WCST수행이 정상 규준에 비해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판단 및 행동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실행 기능상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17> 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

		평균	표준편차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	총 오차 수(원점수)	62.59*	17.96
	Categories 완성 수(원점수)	2.61*	1.74
	Failure to maintain set (원점수)	1.12*	1.30
	총 오차 수 (표준점수)	75.05	11.54
	총 오차 수 (T-점수)	32.72	8.50
	총 오차 수 (백분율 점수)	9.41	11.02

한편 대상자를 폭력사범(강도, 강간, 성폭력, 폭력)과 비폭력 사범(절도, 사기, 약취유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의 검사 평균을 비교하였다. 58명의 피감호자들을 폭력성향의 범죄집단(강도, 강간, 성폭력, 폭력 47명, 71%)과 비폭력적인 범죄집단(절도, 사기, 약취유인 11명, 19%)으로 나누어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WCST의 총 오류 수 (T-점수)의 폭력성향 범죄집단의 점수는 33.85 ± 7.44 , 비폭력성향 범죄집단의 점수는 27.91 ± 11.24 로 나왔으며 폭력성향 범죄집단이 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오류를 더 많이 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 < .05$).

또한 교육연한에 따른 전두엽 기능을 평가하여 보았을 때 교육연한이 길수록 WCST에서 범하는 총 오류 수의 개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표 18> 교육연한과WCST(총 오류 수)간의 상관

		총 오류 수	
		표준점수	t-점수
교육연한	Pearson 상관계수	-0.260	-0.269
	유의성	$p < .05$	$p < .05$

나이를 통제하였을 때 전과회수와 WCST에서 'Failure to maintain set'($r=.29$, $p < .05$, $df=54$)와 '총 오류 수, percentile 점수'($r=.30$, $p < .05$, $df=54$)의 두 점수에서 정적 상관을 보인다. WCST 수행이 저조한 사람은 전두엽 기능에 장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 판단 능력, 충동 및 감정 조절 능력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

2) 단어 유창성 검사 및 지능(K-WAIS)

단어 유창성 검사와 지능과의 연관성을 보면 어휘와 산수 소검사 점수,

그리고 연령별 환산 지능지수와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표 19).

<표 19> 단어유창성검사(정반응 점수)와 K-WAIS 간의 상관

		K-WAIS 어휘	K-WAIS 산수	연령별 환산 지능 지수
단어유창성 검사 (정반응)	Pearson 상관계수	0.37	0.44	0.36
	유의성	P<.01	p<.001	p<0.01

한편 K-WAIS로 측정한 지능과 성격장애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20).

<표 20> K-WAIS와 성격장애 간의 상관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 장애	수동 공격성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 장애	분열성 성격장애
K-WAIS 차례맞추기	Pearson 상관계수		-0.34			
	유의성		p<0.01			
K-WAIS 어휘	Pearson 상관계수					-0.27
	유의성					p<0.05
K-WAIS 토막짜기	Pearson 상관계수		-0.31		0.47	
	유의성		p<0.05		p<.001	
K-WAIS 산수	Pearson 상관계수	-0.34		0.33		
	유의성	p<0.01		p<0.05		
연령별 환산 지능 지수	Pearson 상관계수		-0.44		0.26	
	유의성		p<0.001		p<0.05	

3. 현지조사 연구에 대한 고찰

1) 진단편람에 의한 I축 장애

본 연구에서 DSM-IV에 의한 정신과적 진단 결과 조사 대상인 37명의 수감자 중 17명이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불안이나 우울 등의 가벼운 신경증적 증상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질관련장애(알코올 중독 등)로 보인다. 17명 중 6명이 술이나 약물(암페타민)남용이나 의존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물질관련 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반사회성 병리와 물질남용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⁵⁶⁾ 또한 범죄행위 자체도 물질남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외국의 보고를 보면 범죄자의 52-65%가 물질남용 환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술을 비롯한 물질남용 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질남용에서 회복되었다고 반사회적 성격 자체가 교정된다거나 재범의 비율이 확연히 준다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리도 교정치료센터에서 1993-1994년 실시한 약물남용 프로그램은 비참가집단(60%)에 비해 참가집단(48%)에서 재범이 줄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⁵⁷⁾ 그러나 술을 비롯한 물질중독이 범죄와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한국적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울, 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I축 질환의 존재는 오히려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피보호감호자들의 치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치료 반응 예측인자를 보면 불안이 있는 경우, I축 진

56) Holden C. Growing focus on criminal careers, Science 233 : 1377-1378, 1986

57) Marquis HA, Bourgon GA, Armstrong B, Pfaff J. Reducing recidivism through institutional treatment programs, Research in belief

단에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 I축 진단에서 우울증이나 기질적 뇌 손상이 아닌 다른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들 수 있다.⁵⁸⁾ 물론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긍정적인 예견인자만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예견인자를 전혀 가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긍정적 예견인자 자체는 치료 적응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시에 이들의 우울, 불안 등 I축 진단을 실시하여 필요시 이를 상담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II축 진단에 의한 성격장애

외국의 연구들을 보면 성격장애, 특히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가한 59명 중 18명(30.5%)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되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외국의 연구와 동일한 소견이다.⁵⁹⁾ 상습적, 만성적 범죄자들 중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자들의 비율이 높고 이들은 충동적이고 책임감이 약하고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데 만성범죄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라는 확실적인 관점의 접근은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정신과적 진단기준(미국정신의학회 진단편람:DSM-IV)을 보면 아래와 같다.

- A.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양상을 15세 이후에 전반적으로 나타내며, 다음 중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일 것:

58) 이정태와 채영래 공역, 역동정신치료 제 3판, 하나의학사, 2002

59) Hare RD. Diagnosis of antisocial personality in two prison populations, Am J Psychiatry 140 : 887-890, 1983

1. 체포 여부를 불문하고 구금의 이유가 되는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해서 보이는 등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못한다
2.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하여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며 가명을 사용하거나 남을 속인다
3.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충동적이다
4. 성미가 급하고 공격적이어서 반복해서 싸움을 하거나 남을 협박한다
5.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다
6. 지속적으로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재정적 책임을 중히 여기지 않는 등 지속적인 책임감이 없다
7.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도 냉담하고 합리화 하는 등 뉘우침이 없다

B. 현재의 연령이 18세 이상일 것

C. 15세 이전에 행동장애의 증거가 있을 것

D. 정신분열병이나 조증기에만 나타난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두 유형, 즉 충동적 공격형(impulsive aggressive type)과 계획적 공격형(premeditated aggressive type)으로 나눌 수 있다.⁶⁰⁾ 충동형은 언어 표현력이 떨어지고 흔히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검사 소견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집단의 행동 대원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계획형은 오히려 냉혈한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범죄 집단의

60) 신영철. 현대인의 성격장애와 충동성, 정신병리학 제 11권 1,2호, 30-35, 2002

우두머리 격에 해당될 것 같다. 이들은 사자가 토끼를 사냥하기 전과 같이 오히려 공격성을 숨기고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행동을 추진한다. 따라서 이 두 유형이 가진 충동성은 의미나 표현 양상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반복적으로 폭력적 범죄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의 경우 치료적인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정신과적 접근보다는 교도소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병동, 비의학적 공동거주 프로그램 등 특수한 치료시설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⁶¹⁾ 특수화 된 수용시설에서는 동질적 구성 때문에 치료가 촉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경우 정신치료적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살인 등의 폭력사범, 행동에 대해 뉘우침이나 합리화조차도 없는 경우, 지능이 매우 높거나 반대로 경증의 정신지체를 가진 경우, 타인과의 정서적 애착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정신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⁶²⁾ 이들은 오히려 앞서 언급한 특수 시설과 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반사회적 성격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I축 질환이 공존한 경우 등은 정신과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격장애 자체의 교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충동적 성향, 분노 조절 등에 대해서는 체계화 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충동성 및 분노척도

‘충동성’이란 빠르게 반응하며 사려성이 부족한 성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만한 조작적 정의

61) 이정태와 채영래 공역. 역동정신의학 제 3판, 하나의학사, 2002년

62) 위의 책에서 인용

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경솔하고 주의력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낙천적이고 태평하고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 주저하지 않고 일을 빨리빨리 해 치우고 자기 기분대로 대로 즉흥적으로 결심하는 사람,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 자신의 행동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앞 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는가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기 어려운 사람, 인지적 장애자, 그리고 미로학습의 장애자 등의 행동특징을 기술할 때 충동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⁶³⁾ 그러나 충동성의 개념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심리학 영역에서는 하나의 성격특질로 간주되고 있으나, 정신병리학 영역에서는 하나의 행동장애의 증후로 간주되기도 한다.⁶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충동성은 보상이나 비처벌에 민감한 반면 처벌에 둔감하여 위험이나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자신이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운동행동이 빠르거나 짧고, 미래상황을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더 중시하며, 모험 추구적이며 주의가 산만하여 결정을 빨리 내리는 성향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는 충동성을 정상적 성격특질이 아니라 역기능적 증후로 보는데 충동성은 충동조절장애를 비롯한 여러 정신질환의 진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충동성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문제해결 방식을 선택할 때 영향을 주고 실제 행동에서 상당한 개인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그 동안

63) 이인혜. 기능적 충동성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성격적 및 인지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1 : 67-89, 2002

64) 이현수. 충동성 : 특질인가? 증후인가? 중대논문 제 35집(인문과학편) : 173-202, 1992

연구에서 특정 행동과 충동성을 연결시키려는 연구가 많았으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충동성이 본질적으로 단일 요인이 아니라 중다차원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동성을 어떻게 정의하건 그 동안 충동성은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높은 행동경향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정신병리학에서는 충동성을 정상 성격특질로서가 아니라 역기능적 증후로 간주한다. 충동성은 충동조절 장애의 핵심 특징이며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같은 성격 장애⁶⁵⁾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주정중독, 물질남용 등⁶⁶⁾의 진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충동성은 부정적 결과와 관련이 높은 행동경향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이 직접 반사회적 행동과 연관이 있는지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충동성이 높은 피보호감호자들이 상황분노 점수와 특성분노, 그리고 분노표현과 억압이 높은 반면 분노조절은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시설 내에서도 적응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충동적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노폭발이 일어나고 폭력적 범죄행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후 범죄의 예방 뿐 아니라 감호시설 내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도 충동성을 줄여주고 분노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감생활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로 생각된다. 따라서 먼저 초

65) Stein DJ, Hollander E, Liebowitz MR. Neurobiology of impulsivity and impulse control disorders. J of neuropsychiatry Clin Neurosci 5 : 9-17, 1993

66) Von Knorring L, Orelund L, Von Knorring AL. Personality trait and platelet MAO activities in alcohol and drug abusing teenage boys. Acta Psychiatr Scand 75 : 307-314. 1987

점을 향후 사회복귀 후의 충동성이나 분노문제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지금-여기(here-now)에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감호시설 내에서의 생활에서 충동적 행동이나 분노, 공격적 행동들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더 이상의 문제를 차단하고, 이에 대해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보고를 보면 비참가집단(60%)에 비해 프로그램 참가자 집단(33%)이 재범율이 현저히 낮았음을 알 수 있다.⁶⁷⁾ 한편 공격적 행동과 범죄행동을 한 고위험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퇴원 6개월 후 39%의 환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였고, 42%는 재입원, 20%는 범죄행위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⁶⁸⁾ 특히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거나 정신병질 점수가 높은 경우, 난폭한 범죄의 병력, 학습장애가 있는 경우 재입원이나 범죄의 가능성이 높았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알코올 등 물질사용장애가 동반된 경우 예후가 좋지 않았다. 충동성은 물질남용장애 등의 각종 중독성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알코올 중독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은 내용은 다양하고 방식은 다르지만 대부분 인지행동치료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이외에 사회기술 훈련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67) 조성희, 김보경, 김종률.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프로그램에 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68) Kunz M, et al. Course of patients with histories of aggression and crime after discharge from a cognitive-behavioral program, Psychiatr Serv, 55:654-659, 2004

한편 충동성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충동적인 사람은 계획성이 적고 무질서하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활동적이고 정열적이며 생동감이 넘치는 등의 긍정적인 특성도 있다. 수행 능력을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실험 과제가 단순할 때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충동성이 적은 사람들보다 빨리 반응하고, 주어진 시간이 짧을 경우 충동성이 낮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정확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⁶⁹⁾ 전통적인 협의의 충동성은 역기능적 충동성과 상관이 높아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충동성 조절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충동성과 분노표현을 억제하려는 노력과 함께 충동성의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이 가진 에너지를 높게 평가하고, 이를 긍정적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방향전환이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한다.

4) 전두엽 기능

전두엽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과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차원적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가장 핵심적 부위 가운데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를 통해 전두엽의 기능을 측정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수행점수가 정상기준에 비해 유의미하게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판단 및 행동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떨어져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또한 폭력성향 집단과 비폭력 성향 집단을 비교했을 때 폭력 성향 집단이 유의미하게 더 많은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나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더 심하다

69) Dickman SJ, Meyer DE. Impulsivity and speed-accuracy tradeoffs in information processing. J Personal Soc Psychol 54 : 274-290, 1988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정신의학에서는 생물학적 접근법의 발달로 인간의 행동을 뇌 기능과 연관시켜 이해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충동적 공격성과 폭력적 행위가 뇌의 전두엽 기능저하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⁷⁰⁾ 이들의 뇌 척수액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러한 뇌 기능의 이상은 유전적, 환경적 영향을 받아 발생하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진 경우 치료적 접근이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약물학적 연구를 보면 세로토닌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약물들과 일부 비전통 항정신병약물이 충동적 공격성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희망을 주고 있다.⁷¹⁾ 이에 대한 국내 자료가 적고 실제 감호시설에서 적용하기 힘든 어려운 점이 있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부의 공격적 수감자들에게는 치료적인 목적에서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향후 좀 더 자료가 축적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에는 전두엽의 기능 중 주의력과 기억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인지재활 치료 프로그램⁷²⁾⁷³⁾이 개발되어 정신과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치매와 같은 기질적 이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

70) Lee R, Coccaro E. The neuropsychopharmacology of criminality and aggression, *Can J Psychiatry*, 46:24-25, 2001

71) Walker C, Thomas J, Allen TS. Treating impulsivity irritability, and aggression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with quetiapine, *Int J Offender Ther Comp Criminol* 47:556-557, 2003

72) 김연희 등. 주의력 향상에 중점을 둔 한국형 컴퓨터 인지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대한재활의학회지* 27(6) : 830-839, 2003

73) 김연희 등. 기억력 훈련을 위한 컴퓨터 인지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대한재활의학회지* 27(5) : 667-674. 2003

로 일부 시도되고 있는데 이를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범죄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행동교정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제언

연구자들은 피보호감호자 162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정신과적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I축 질환을 조사하였는데 알코올 중독 등 물질관련장애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물질관련장애는 반사회성 병리, 즉 충동성, 공격성 및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단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의 경우 정신과적 면담과 약물치료 등을 통해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59명의 성격검사 대상자 중 18명(30.5%)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되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자체는 정신과적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 특수한 치료환경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환경과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가 필요하고, 또 치료가 가능한 성격장애자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경우 치료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일부 개인 역동정신치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들 중 불안이 있거나 I축 질환이 공존하는 경우는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공동거주 프로그램이나 병동의 구조와 유사한 수용시설 등이 효과

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수용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충동성 척도의 점수가 높은 피보호감호자들이 상황분노점수와 특성분노, 그리고 분노표현과 억압이 높은 반면, 분노조절은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동성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설 내에서의 문제, 즉 지금-여기(here-now)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겠다. 즉 시설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치료적 중재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겠다.
4.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와 지능검사 등을 통한 전두엽 기능검사에서 상 대상자들은 정상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폭력적 범죄 집단의 경우 기능저하가 더 현저하였다. 이들을 위해서는 신경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접근, 즉 약물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두엽의 기능 중 주의력과 기억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인지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정신과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치매와 같은 기질적 이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시도되고 있는데 이를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범죄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현재와 같은 단순 수용적 접근을 떠나 범죄의 유형과 성격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치료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감호 시 이들에 대한 정신과적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1. 책임주의를 포기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위험한 재범자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크게 형벌가중, 부정기형의 부과 및 보안처분제도 등이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 위험한 상습범죄자들에 대하여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책임요소에 행위자의 위험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행위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형법체계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물론 위험한 상습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 강제조치로서 형벌을 보충 또는 대체하는 제재수단으로 등장한 보호감호와 관련하여서도 그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보호감호제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가장 오랫동안 언급되어 오고 있는 문제는 이중처벌의 위헌성이다. 보호감호가 재범위험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형사책임이 종료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일정 시설 내에 구금하는 본질적으로 반인권적인 제도이며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고 한다.⁷⁴⁾ 이는 우리 형법이 이미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하여 형법과 특별법 등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 법원이 그러한 법률에 따라 범죄인의 교육·개선에 부족함이 없는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더하여 교육·개선을 명목으로 형벌을 마친 대상자에게 또다시 장기의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를 위반하는 위헌성이 있고, 그 자체 적법절차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74) 유해정, “사회보호법, 왜 인권의 문제인가?”,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3. 5. 22(<http://antiprison.org>) 참조.

수 없다는 것이다.⁷⁵⁾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보호감호의 집행에 있어서 일반 형벌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형벌과 보안처분은 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집행의 유사성에서 보호감호제도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⁷⁶⁾

위의 외국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과거에 보안처분제도를 두고 있던 나라들에서도 우리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보안처분제도의 적용을 최소화하거나 더 나아가 폐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위 공공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위험한 상습범죄자들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에서 형벌을 강화하거나 부정기형을 부과하는, 심한 경우에는 무기자유형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형벌론과 관련하여 형벌일원주의를 택하느냐 아니면 형벌이원주의를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형벌일원주의를 취하게 되는 경우 형법에서의 책임주의원칙이 형해화 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책임원칙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차츰 형벌을 책임원칙이 아닌 예방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원칙의 제한, 더 나아가서는 책임원칙을 포기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예방이론만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 자칫 국가형벌권의 남용에 구실을 주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원칙을 발전적으로 구체화하면서 예방적 고려를 특별히 가미한 책임개념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75) 박찬운. “보호감호제도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3. 5. 22(<http://antiprison.org>) 참조.

76) 이러한 관점에서 보호감호제도를 ‘선택적 무력화 전략’이라고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희기,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은폐된 무력화 전략과 직관적인 미래예측의 가혹성”, 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세미나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7. 1, 27면 이하 참조.

2. 형벌일원주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은 무엇인가?

이처럼 형벌과 보안처분의 동일성에 근거한 이중처벌의 위험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형벌일원주의에 따르게 되면, 책임과 위험성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면서 책임원칙을 배제 내지는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형벌일원주의에 의하게 되면 형사제재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은 하나가 되어 형법은 결국 보안형법으로 남게 되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한 형사사법 대응으로 가중된 형벌이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보안처분을 포기하고 형벌강화로 선회한 많은 국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러한 형벌강화가 단순히 위험한 상습범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 범죄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형벌강화의 방식이 오히려 보안감호를 통한 책임과 위험성의 개념을 구분하는 경우보다도 비례성의 원칙에 더욱 어긋나는 인권침해적인 형벌부과의 가능성이 전체 범죄자를 대상으로 높아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⁷⁷⁾

예컨대 위에서 살펴본 영국과 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위험한 상습범에 대한 형법적 처우로 사용되고 있는 형벌가중의 방식이 위험한 재범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재범자들, 심지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77) 이에 개선 가능한 상습범죄자 또는 범죄인에게는 ‘교정처우’에 치중한 보호감호처분과 개선이 곤란한 상습범죄자 또는 범죄인에게는 ‘격리수용’에 치중한 보호감호처분의 이원적 제도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임웅, “누범수형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1호, 1992, 252면 참조).

3. 성격장애 상습범죄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한 상습범죄자들에 대한 형벌강화가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습범의 경우 의지박약 등과 같은 성격장애에 의하여 상습범죄자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이번에 청송감호소에서 피보호감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물질장애와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일정부분 나타난 것을 보면 그들을 단순히 시설 내에 구금하는 것으로 형벌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독일의 사회치료처우의 모델을 우리나라의 행형에, 특히 성격장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이러한 처우를 통해 소위 위험한 재범자 내지 상습범죄자로부터 사회보호와 재범예방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독일의 사회치료시설의 처우방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에 주위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검토한 많은 나라의 경우에서 특히 위험한 재범자에 대한 강화된 형사제재가 폭력범죄 내지 성범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 사회치료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한번쯤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의 조사결과뿐만 아니라 이번 청송보호감호소에서 피보호감호대상자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도, 예컨대 알코올중독 등 물질관련장애가 나타난다거나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나타나는 등 상습범죄자들에게 일정한 성격장애와 관련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적

절한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치료처우를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예산지원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인력과 예산부족만을 이유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 교정처우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본다면, 현재와 같은 단순 수용적 접근을 떠나 범죄의 유형과 성격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치료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회치료처우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에서 많은 나라의 경우 성폭력 범죄와 특히 중한 폭력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같이 최소한 성폭력범죄자 및 특히 폭력성이 중한 강력범죄자 정도만이라도 정신과적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그러한 조사를 통한 원인분석과 함께 성격장애와 관련된 대상자 그룹이 있다면 그에 적절한 사회치료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독일의 베를린 사회치료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프로그램의 5가지 중점프로그램과 같이, ①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행동양식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② 심층심리에 바탕을 둔 중점과제(개별상담 및 집단치료), ③ 행동치료적 중점과제(집단치료 및 개별상담), ④ 환경치료적 중점과제(사회배우기), ⑤ 반폭력성 훈련 등을 참고한다거나, 폭력성 내지 상습범죄자에 대한 행형상 집행방법의 하나로 구상된 독일의 '빌레펠트 모델'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빌레펠트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동요법, 접촉요법, 작업요법, 약물요법, 음악요법 등과 같은 사회치료 방법을 우리의 형집행 과정에서 상습범죄자, 특히 성격장애로 인한 상습적인 범죄자에게 적용해 보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 청송감호소 현지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I축 질환의 경우 물질관련 장애의 비율이 높았고, II축 질환의 경우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

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히 평가하고, 이 평가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위해서는 우선 각 광역자치단체 별로 교도소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학자 등 전문 인력과 전문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상습범죄의 많은 경우 술을 비롯한 물질중독이 범죄와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그러한 물질이 원인이 되어서 일반인들에 비하여 자제력의 부족 등에서 범죄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면 이들을 위한 한국적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개발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사회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면 가석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반영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연희 등. 기억력 훈련을 위한 컴퓨터 인지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대한재활 의학회지 27(5) : 667-674, 2003
- 김연희 등. 주의력 향상에 중점을 둔 한국형 컴퓨터 인지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대한재활의학회지 27(6) : 830-839, 2003
- 김혜정. 현행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정책적 재조명,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2003.
- 박재윤.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행형목적과의 관계, 교정연구 창간호, 1991.
- 박찬운. 보호감호제도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3
-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형사법개정자료 XIV, 1992
- 법무부 보호국. 보호감호행정 혁신방안 검토안, 2003
- 신영철. 현대인의 성격장애와 충동성, 정신병리학 제 11(1,2):30-35, 2002
- 심희기.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은폐된 무력화 전력과 직관적인 미래예측의 가혹성, 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세미나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염태호, 박영숙, 오경자, 김정규, 이영호. K-WAIS 실시요강.서울:한국가이던스, 1992
- 유해정. 사회보호법, 왜 인권의 문제인가?,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3
- 이경재. 미국 행형의 역사와 그에 대한 평가,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2001
- 이인혜. 기능적 충동성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성격적 및 인지적 특징. 한국

심리학회지(일반) 21:67-89, 2002

이정태와 채영래 공역. 역동정신의학, 제 3판, 하나의학사, 2002

이현수. 충동성 : 특질인가? 증후인가? 중대논문 제 35집(인문과학편) :
173-202, 1992

임 응. 누범수형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1호, p252,
1992

장규원. 독일형법 제65조(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의 삭제와 상습누범자의
대책 - 독일연방법무위원회 주최 공청회의 토론을 중심으로, 형사
정책연구소식 통권 제16호, 1993

장규원.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조성희, 김보경, 김종률.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프로그램에 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조준현. 누범가중처벌조항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교정, 1991/5

독일문헌

Allen, "Die Behandlung der gefährlichen Gewohnheitsverbrecher im
englischen Strafrecht", ZStW 80, 1968, S. 163-175.

Baurmann, "Schuldlose Dogmatik?", in: Lüderssen/Sack(Hrsg.), Abweichendes
Verhalten IV, 1980, S. 196-265.

Dölling, Das 23. Strafrechtsänderungsgesetz, NJW 1987

Dünkel, Sozialtherapeutische Behandlung und Rückfälligkeit in Berlin-Tegel,
MschrKrim, 1979

Expertenkollquium, "Sozialtherapeutische Bahandlung von Sexualstraftätern".

Greger, Das 23. Strafrechtsänderungsgesetz, JR 1986.

- Hillenkamp, "Zur materiellen Rückfallklausel des § 17 StGB", GA, 1974.
- Hofmann, U. Die Verwahrung nach Art. 42 StGB, insbesondere in der Praxis der Ostschweizer Konkordatskantone, Diss., Zürich, 1985.
- Kaiser, Günther/Schöch, Heinz, Strafvollzug, 2002.
- Kaiser/Schöch, Zur Einführung der sog. "nachträglichen Sicherungsverwahrung" durch das Straftäter-Unterbringungsgesetz in Baden-Württemberg, 2001.
- Kinzig, J., Die sicherungsverwahrung auf dem Prüfstand - Ergebnisse einer theoretischen und empirischen Bestandsaufnahme des Zustandes einer Massregel, 1996.
- Mauch, Sozialtherapie und di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1971.
- Meier, B.-D., Strafrechtliche Sanktionen, 2001.
- Ortmann, R., Resozialisierung durch Sozialtherapie, ZStW 96, 1984, S. 794-833.
- Ortmann, Zur Evaluation der Sozialtherapie, ZStW 106, 1994, S. 782-821.
- Ortmann, R., Sozialtherapie im Strafvollzug, 2002.
- Rasch/Kühl, Subjektives Leiden als sozialtherapeutisches Behandlungskriterium - FPI-Ergebnisse bei Tätergruppen des § 65 I 2 StrRG, MschrKrim, 1973, S. 237-245.
- Rasch/Kühl, "Psychologische Befunde und Rückfälligkeit nach Aufenthalt in der sozialtherapeutischen Modellanstalt Düren", BewHi, 1978.
- Rehn, Behandlung im Strafvollzug, 1979.
- Sagel-Grande, I., Di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m strafrechtlichen Rechtsfolgensystem der Niederlande, ZStW 103, 1991, S. 732-760

Sagel-Grande, I., Neue Entwicklungen im niederländischen Maßregelrecht, ZStW 106, 1994, S. 869-879.

Sagel-Grande, I., Das niederländische Strafsystem. Gesetzliche Regelung und richterliche Anwendung, MschrKrim 78, 1995, S. 312-321.

Schultz, H., Bericht und Vorentwurf zur Revision des Allgemeinen Teils und des Dritten Buches "Einführung und Anwendung des Gesetzes" d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 Bern, 1987.

Steller, Sozialtherapie statt Strafvollzug, 1977.

Weitekamp/Herberger, Amerikanische Strafrechtspolitik auf dem Weg in die Katastrophe, NKP, 2/1995, S. 16-22.

영미문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1994

Ashworth.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 3rd ed., 2000

Blomberg, Lucken. American Penology - A history of control, 2000.

Derogatis LR. SCL-90-R :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 manual-II, Towson, MD: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1983

Dickman SJ.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 Personality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 : 95-102, 1990

Dickman SJ, Meyer DE. Impulsivity and speed-accuracy tradeoffs in information processing. J Personal Soc Psychol 54 : 274-290, 1988

Hare RD. Diagnosis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two prison populations, Am J Psychiatry 140 : 887-890, 1983

- Heaton RK, Chelune GJ, Tally JL, Kay GG, Curtiss G. Wisconsin card sorting test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dessa, FL, 1993
- Home Office. Clamping down on persistent offenders, CJS005/2002.
- Holden C. Growing focus on criminal careers, Science 233 : 1377-1378, 1986
- Kunz M, et al. Course of patients with histories of aggression and crime after discharge from a cognitive-behavioral program, Psychiatr Serv 55:654-659, 2004
- Lee R, Coccaro E. The neuropsychopharmacology of criminality and aggression, Can J Psychiatry, 46:24-25, 2001
- Marquis HA, Bourgon GA, Armstrong B, Pfaff J. Reducing recidivism through institutional treatment programs, Research in belief
- McDonald WF. Repeat offender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ir form, use and perceived value, 1986
- Shane-Dubow S, Brown AP, Olsen E. Sentencing reform in the United States:History, content and effect, Washington, 1985
- Spielberger C.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research edition,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dessa, Florida, 1988
- Stein DJ, Hollander E, Liebowitz MR. Neurobiology of impulsivity and impulse control disorders. J of neuropsychiatry Clin Neurosci 5 : 9-17, 1993
- First MB, Gibbon M, Spitzer RL, Williams JBW.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I Personality Disorders (SCID-II)

- First MB, Spitzer RL, Gibbon M, Williams JBW.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 Disorders (SCID-I), Clinician Version
- Von Knorring L, Orelund L, Von Knorring AL. Personality trait and platelet MAO activities in alcohol and drug abusing teenage boys. *Acta Psychiatr Scand* 75 : 307-314, 1987
- Walker C, Thomas J, Allen TS. Treating impulsivity irritability, and aggression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with quetiapine, *Int J Offender Ther Comp Criminol* 47:556-557, 2003
- Widiger TA, Sanderson CJ. Personality disorders : in *Psychiatry*, p1291, 1997